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010. 12.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과학 기술	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평가위원 제외대상) 질의	3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령 관련문의	3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시설을 이용한 제품생산이 가능한지	4
● 기업부설연구소 건축을 위한 교과부의 추천 방법	5
● 지식서비스업 전문연구요원 배치 관련 질의	6
● 국가기술종목 통폐합 관련 자격 인정여부	6
● 기술사 계속교육 관련 질의	7
● 기술사 과잉 배출 의견	10
● 공직퇴직 후 기술사 교육 훈련 이수에 관한 문의	10
● 기술사 교육기관 확대요청	11
● 기술사 교육비를 사업주가 거부해 개인 사비로 교육을 받을 경우 구제방법	12
● 기술사 교육 학점이수 문의	13
● 기술사 교육학점 관련 문의	15
● 기술사 교육훈련에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과정이 포함되는지	17
● 기술사 교육훈련 직무수행하는자 의 범위	17
● 해외 파견근무 중 기술사 교육이수 의무	21
● 기술사 학점이수제도 중 대학원학점은 인정 안 되는지?	21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1년의 유예기간) 개정 건의	22
●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질의	23
● 서울과학관은 어떻게 되는지	24
● 국정교과서 수업목적 복사 이용 가능한지	24
● 사회인 대학원생이나 석사 2년, 박사 3년의 수업연한을 지난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쓸 수 있어야	25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및 교내 안전관리규정 문의 26
-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인지 27
- 대학교내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 27
- 산학협력단 개교 전 설립 가능 여부 질의 28
- 산학협력단 계약, 선급지급 등 질의 28
-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자본금 출자 가능여부 29
- 학교(산학협력단소속)의 비정규직 행정요원이 다른 사업단에 채용될 수 있는지 · 31
- 동위원소 일반면허 취득사항 조회 32
- 방사선동위원소 면허증 재교부 32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 재교부 33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생산 인허가 33
- 화학탐지기 도입에 관해 문의 34

■ 전문 대학 35

- 사립전문대학에서의 총장선출시기 문의 37
- 사회복지과로의 과명 변경 가능 여부 문의 37
- 전문학사 학위등록 절차문의 38
- 2개 교육과정 운영학과 2개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8
- 학과 재개설시 재임용 탈락사유가 되는지 38
-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소송비용 교비지출 가능여부 39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명칭변경 40
- 학위의 개념과 종류 및 외국 Diploma 등의 학위 인정 여부 40
- 해외 취업 시 학점인정 관련 41

■ 대학 및 대학원 43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특강, 시간강사는 들을 수 없는지 45
- 법인화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이 되는지 45
- 국립대학 법인화 후 등록금 인상 여부 관련 46
- 대학 폐교 시 학생처리 방법 46

●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대학통합사례 자료 요청	47
●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대한 질의	47
● 예술대학의 대학역량강화지원사업 등에 따른 건의사항	48
● 국립대 교수의 겸임	49
● 국립대 조교의 시간강사 겸직	50
● 국립대학교 교수정년	51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51
● 입학전형 구분 수정	51
● 다학기 제도 관련 문의	52
● 대학 겸임교원의 임용기간	53
● 대학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선발인원	53
● 대학 제도에 관한 문의	54
● 대학 편입 전형료 부담 완화해야	55
● 대학 휴학에 관한 문의	55
● 대학교 학생회비에 대한 민원	56
● 대학교와 대학원을 같이 다닐 수 있는지	56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4항 관련 질의	57
● 대학의 4학년 학과변경	58
● 대학의 전과제도에 관하여 문의	58
● 대학편입 시 학점인정에 관한 문의	59
● 명예퇴직금 지급조건(20년 이상 근속한자)	60
●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보강 관련 규정	61
● 보건계열(안경광학과)로의 전과에 대한 문의	61
● 부총장의 자격	62
● 사립대학 교수 신원조사, 신원조회	62
●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결정도 의사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63
● 주야간 이동의 모집단위 이동허용	63
● 2학기제 변경운영	64
● 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65

● 교육의원후보자격에 시간강사 교육경력 인정여부	66
● 정규학력 인정받는 대학 확인	66
● 조교의 사학연금 가입	67
● 통폐합 된 학교의 졸업학교명 기록	67
● 주간대학과 타 학교 야간대학 동시 수학	68
● 집행유예 기간 중 대학교수의 신분 유지	68
● 초빙교원 정년	69
● 편제정원의 의미 및 근거법령	70
● 폐전공학생의 재입학	71
● 중국 사이버대 학력인정 여부	71
● 학력인정 각종학교 명단	72
● 학사 편입학 지원 자격 기준	72
● 해외 어학연수 학점인정	73
● B형간염 양성 판정자 사립대 기숙사 입사 제한	73
● 교육용기본재산 교지의 정의	74
● 국적을 달리하는 국외자도 사립학교법상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74
● 기본재산 권리포기의 의미	75
● 대체의학 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절차	75
● 대학 교내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가능 여부	75
● 대학교내 일반음식점 설치 용도변경	76
● 대학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	77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설치전의 심의	78
● 대학원대학교의 분교설립	78
● 대학평의회 의원자격	79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가능여부	79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	80
● 법인이 특수대학원 설립을 할 수 있는지	81
● 사립대학의 영리활동 관련 질의	82

● 사립대학 교원으로 사학연금 가입	82
● 사립대학 및 중고등학교 직원 및 정년 적용	83
● 사립대학 담보대출 가능한지?	84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85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질의	85
● 학교법인 관계서류 서류보존기간	86
● 학교법인 관계서류 이관 근거	87
●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의 범위	87
● 신학교 설립방법	89
● 총장이 학교법인 상임이사 겸직할 수 있는지	89
● 발전기금의 토지 매각	90
●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재개발 시 신고	90
●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91
● 학교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92
● 해임 의결된 구이사의 긴급사무 처리권	93
● 국공립대 논문심사 경비에 관한 건	93
● 국립대 무논문 학위과정 관련 규정	94
● 대학에서의 재적생에 대한 범위 해석	94
● 대학원 입학정원 관련	95
● 대학원 연구생의 학점 인정	95
● 대학원 이중학적에 대한 질의	96
● 대학원 정원조정관련 문의	96
● 대학원 편입생 산출 연도	97
● 대학원 학과 설립에 관하여	97
● 대학원간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8
● 대학원대학교 현황 요청	99
● 대학원생 제적처리	99
● 대학원진학방법	100
● 대학원학위문의	100

- 로스쿨 학생 추가 선발 관련 101
- 법학전문대학원 강의평가제 관련 지침 유무 질의 102
- 중국 대학 졸업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입학자격 문의 102
- 향후 로스쿨대학 지정에 관한 재신청 102
- 내진설계 관련 문의 103
- 대학교 실험실내 옥내저장소 부대시설 인정여부? 103
- 대학교 교육 및 연구시설 내 음식점 허가여부 104
- 대학교 시설 관련 105
- 대학 내 골프실습실 설치 가능여부? 105
- 대학 내 예식장 가능 여부 106
- 대학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입주가능 여건 106

■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109

-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입학 시 개선할 내용 111
- 사이버대학교 공인인증서 사용 112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에 대한 문의 113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 114
-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 문의 114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문의 115
-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취득 관련 문의 116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질문 116
- 편입 외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문의 117
- 관련과목 일부 이수한 졸업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118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의 2급 승급 방법 문의 118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실습 가능기관 119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대체인정 119
- 평생교육실습 면제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120
- 평생교육실습 면제 가능여부 문의 121

● 고용형태에 따른 평생교육실습 면제조건 문의	12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문의	122
● 편입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123
●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123
● 방통대 편입 학력자격 문의	124
● “독학사”시험	125
● 독학사 시험요일	125
● 독학사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126
● 독학사는 매일 강의를 수강해야 되나요?	126
● 독학사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127
●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오프라인 출석 문제	128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및 전문학사 학위취득	129
●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리부서가 어디 인가요	130
● 시간제등록 관련	130
● 시간제 수업료징수에 관한 건	132
● 시간제 수업에 관하여	132
● 시간제등록생 제도에 대해 문의	133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강의장)에 대한 질의	134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증 인정에 대하여	134
● 학위관련	135
● 학위취득이전에 취득학점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에 관하여	136
● 학점은행제 입차시설활용에 대하여	136
● 학점은행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하여	137
● 학점은행제 증명서 관련	138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139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유학가능여부	140
●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확대요청	141
● 학점인정 취소시 나머지 학점의 인정	142
● 한국방송영상예술원 관련	142

●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대해	143
● 휴학 중 고등교육법 적용 사이버대학 진학건	144
● 사이버 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	144
● 사이버 대학교 2.5학기 편입학 제도	145
● 사이버 대학교설립 절차문의	146
● 사이버 대학에 오프라인교육 이유	146
● 사이버대학 복수전공 신청조건	148
●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에 설비현황	148
● 사이버대 졸업 후 일반대학원진학 가능한지	150
● 사이버대 위탁생 퇴사지 학적처리	150
● 군대에서 사이버대 수업 들을 수 있는지	151
● 사이버대학에서 실습비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151
● 사이버대학원대학도 설립 가능한지	153

■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155
● 교육실습을 면제받기 위해 처리해야 할 순서는?	157
● 교생실습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57
● 교원자격증이 있는데도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158
● 교직과정 이수 학점 관련 문의	159
● 교직과정 이수예정 지원가능 학년 문의	159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생실습에 대해 궁금합니다.	160
● 교직이수 자격증을 받고 교생실습을 나가야하는 건가요?	161
●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161
● 기술사 취득 후 우대사항(교원 무시험검정)	162
● 교직수업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지요?	162
● 대학원에서 독학사를 인정여부?	163
● 독학사 학위로 교육대학원에 입학가능한가요?	163
● 물리치료과를 졸업 후 대학원을 특수교육과로 진학가능한가요?	164

● 미술치료사 교원자격증 가능한가요?	165
● 보건교사가 되는 방법	165
● 양호교사 자격이 보건교사 자격으로 변경하는가요?	166
● 보육교사 2급으로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6
● 부기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167
● 부전공자의 교원자격증취득 관련 문의	168
● 사립대학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169
● 사범대학으로 전과 내용 질의	170
● 상담교사 자격증 관련 질의	171
● 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171
● 상담교사임용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72
● 상담교사자격증2급 취득하려고 하는데	173
● 석/박사 학위자 특별연수로 교사자격증 취득	174
● 실기교사를 취득 방법	175
● 실기교사 임용 후 교육대학원에서 2정을 취득	175
● 언어치료사 준2급 자격을 가지고 실기교사 임용고시에 응시가능한가요?	176
● 실기교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76
● 실기교사를 준교사 자격증으로 갱신이 가능여부	177
●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178
●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향후 진로는?	178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원자격 취득관련 문의	179
● 정교사 2급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	179
●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179
● 교대 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리 따놓아도 되나요?	180
●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직이수에 관한 교육실습 여부문의	180
● 준교사 취득방법이 궁금합니다.	181
● 해외에서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중국어 중등교사 임용가능한가요?	182
● 군 복무자에 복수전공 가산점 문의	182
● 중등임용시험 접수 시 자격증 발급기관의 기재	183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되는 방법 184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기계, 금속) 자격증 문의 184
- 초중등 영어교사 자격 185
- 교육공무원 임용 시 동점자 처리규정 중에 군필자에 대한 문의 185
- 초등임용고시 지역가산점에 대한 문의 186
- 초등임용고시 제도개선 관련 문의 187
- 컴퓨터 교육 전공 학생 임용고시 관련 188
- 특수과목 중등임용고시 임용가능한가요? 188
- 특수교사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요건 189
- 특수교사 중등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문의 190
- 특수대학원 입학 191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기준 질의 192
- 표시과목 변경 관련 193
- 학점은행제를 통한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193
- 미국국적자 영어교사 되는 방법? 194
- 박사학위 소지자의 중등교원 지망 195

■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197

- 국가근로 장학금 관련 199
- 국가장학기금사이트 출근부 입력방식 199
- 국가근로 장학생 시간 단축 200
-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예산이 줄었나요? 200
-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력증명 확인서 발급 201
- 국가근로 장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
- 국가연구 장학생(이공계) 대학원생 미선발 관련 202
- 국가장학금(이공계) 선발 방식에 관해서. 202
- 정부학자금대출관련(대출 소요기간) 203
- 2010학년도 신입생의 생활비 대출 요건 203

● 정부학자금 지원 대상범위 해외유학생까지 확대 요청	204
● 군복무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관련	205
● 군 전역 후 복학생 등록금에 관하여	206
● 대학 등록금의 일부 반환	206
● 군 입대 휴학생 미복학 제적의 경우 등록금 반환	207
● 근로장학금	208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학비 지원	209
● 기초생활수급자 성적제한	209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관련	210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언제 되는지	211
●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 요청	211
● 저신용자의 대학 등록금 대출	212
●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시행 혹은 카드 납부 허용 법규 제정요청	213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문의	214
● 대학 입학금 부과기준 및 사용처	214
●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 시 등록금 자동 소멸	215
● 대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 산출방식 질의	216
● 대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 산출방식 추가 질의	216
●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지원제도에 대한 즉각 개선 요청	217
● 대학원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반납	217
● 미복학제적의 등록금 반환 가능여부?	218
● 등록금 부과 시 법에 정해진 수납이외의 규칙이 존재하는지	219
●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	220
● 자퇴 시 등록금 반환	221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의 수능성적 적용	222
● 수업료 반환규정 질의	223
● 정부학자금대출제도에 따른 저신용 등급자 양산문제	224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청년 양산	225

● 학자금대출 신청 시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여부	226
● 다자녀가정의 정부학자금 지원	226
● 신입생의 생활비 대출 불가	227
● 직업전문학교의 학자금대출 문의 드립니다.	227
● 성적장학금 수혜자의 규정에 관한 질의	228
● 차상위 복지대상에 대하여	229
●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가요?	230
● 차상위 장학금 지급방법	230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231
● '10학년도 신입생의 취업 후 상환대출기간 문의	232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소득기준 문의	233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성적기준 문의	23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문의	23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격에 대하여	234
● 취업후학자금상환에서 연령제한	235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민원	236
● 유학생 학비대출	236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친권자 동의	236
● 대출금리 이자지원 관련 소득기준 산정에 관한 질의	237
● 현역병 이자지원제도의 문제점	237
■ 기 타	239
● 꿈나래21 홍보간행물 구독방법	241
● 국비유학제도를 신청 방법	241
● 기초생활수급자 국비유학 지원정책	241
● 총액인건비 관련 문의	242
● 학교건축 계약의 유형	243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문의	243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해석 요청	244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절차에 따른 질의	246
● 대학교원현황	247
● 대학생 취업자 대상 건보가입자 현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248
● 학교알리미 공시	248
●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방법	249
● 국립대 교원이 음주운전 사면 시 이로 인한 징계사유도 소멸되는지	251
● 보안업무 관련	251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55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5



Ⅱ.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과 학 기 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평가위원 제외대상) 질의

질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1.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관 연구기관의 자문(심의)위원이거나 동 연구기관의 위탁 과제를 수행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자를 연속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7.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평가위원 제외대상자 중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특히,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도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또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의 자문(심의)위원이거나 동 연구개발과제와 연속된 이전 연구개발과제의 위탁과제를 수행한 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령 관련문의

질의

○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령 문서를 확인하는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해당 서식을 다 작성한 후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5. [과학기술전략과]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법정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시고 조직도 등 구비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자료 : www.koita.or.kr에서 연구소/전담부서 → 신규설립 참조

* 제출처

(서울, 경기, 강원, 제주지역) 연구소인정팀 :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번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충청, 호남지역) 대전사무소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
개발특구지원본부 306호

(영남지역) 영남사무소 :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 2011년 상반기부터 온라인(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가 가능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시설을 이용한 제품생산이 가능한지

질의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시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대리점 또는 공장으로 배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법적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시생산 시설로 생산을 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공장 용도 허가 등)

회신

회신일 : 2009. 9. 29. [과학기술전략과]

-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고요령(교과부 고시, 첨부물 참조)을 보면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제품생산을 하려면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공장등록신고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귀 기관에 속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건축을 위한 교과부의 추천 방법

질의

- 저희는 부설연구소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득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 및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5. [과학기술전략과]

- 보전임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의 제1호)
- 교육과학기술부 추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추천의뢰서(첨부물 참조) : 추가 첨부서류 및 첨부도면은 추천의뢰서 하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2부 제출)
 2. 제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2100-6629)
 3. 처리기간 : 대략 한 달 정도(현지실사 등 포함)
 4. 주요 검토내용
 - 가. 연구소 신축계획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현황
 - 나. 연구소 신축 사유
 - 다. 연구원, 연구기자재 등을 고려한 적정면적, 경사도
 - 라. 민원 발생 소지



지식서비스업 전문연구요원 배치 관련 질의

질의

-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1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당시 발표 내용으로는 '09년 10월에 전문연구요원 운영위원회에서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협의를 하고 '10년 6월에 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받고 '10년 11월에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 발표된 '09년 1월 이후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8. [과학기술전략과]

-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조항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으로 이관예정으로 동 개정 법률안을 '08년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식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전문연구요원 배정문제는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병무청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술통합 관련 자격 인정여부

질의

- 저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4회에 걸쳐 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분야) 시험을 응시하여 52~58점까지 점수가 나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기술사 자격종목 통폐합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공히 건축설비공학기술사에 포함되어 있어 어차피 제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취득하여도 자격증은 하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는 건축설비공학기술사중에서 건축기계설비와 공조냉동기계로 두개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6.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종목정비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도하에 TF팀이 구성되어 89개 종목을 16개 종목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공청회('09.10.30)를 거쳐 의견수렴을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09.12.)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6월부터 기술사 종목정비를 위한 분야별 W/G를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청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확정적인 답변이 불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자격정책과)에서 기술사 종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계속교육 관련 질의

질의

- 2008년12월에 항공기관기술사를 취득한 공무원입니다. 기술사 교육을 받으라는 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받아 교육을 신청하려고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공무원 특성상 청 또는 국에 배속된 교육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데 기술사 취득자가 부서에서 2명밖에 안되고 교육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만약 제가 기술사 계속교육을 위해 기술사협회에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속한 부처에서 교육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야 하는지요?

[질문2] 기술사 계속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3년 이내 지정된 학점 못 이수) 기술사 자격이 박탈되는 지요?

[질문3] 기술사만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사 계속교육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8.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가 공무원인 경우 '기술사 교육훈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승인 2009. 10. 21) 별표2'에 의해 기술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특별 채용되었거나 계약직공무원 등 특별 채용된 경우에 한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자격을 통한 특채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제외 신청서(재직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관리기관인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시면 되며, 향후 퇴직 후 교육대상으로 포함되신 시점부터 교육이수를 하시면 됩니다.(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Fax : 02-557-7408) 참조)
-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02-3288-3781~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제외 신청서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제외 신청서

인적 사항	기술사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청일자	
	주소	(전화번호:)		
	기술분야		기술범위	
교육 훈련 대상 제외 사유	근무처명			
	부서 및 직위			
	주소 및 연락처			
	수행업무			
	제외사유			
	기술사직무 미수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기술사 직무수행 이전까지)
<p>본인은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퇴직, 해외체류)증명서 또는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국제기술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시점에서 교육훈련 대상에 자동 포함되며, 기술사 직무를 다시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기술사 과잉 배출 의견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술사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에 합격 할 때인 2007년 2월 시험에 1차 합격한 사람은 전국을 합쳐 63명 정도 이었습니다. 기술사의 최종 2차 합격률이 50%이상인걸로 보면 그 정도면 1년에 약200명 정도가 토목시공기술사로 배출되어서 충분한 자질과 검증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근래에는 토목시공기술사를 비롯한 건축시공기술사의 배출이 너무 많은걸 넘어서서 과잉 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토목시공기술사(1차)의 배출은 총 482명 건축시공기술사(1차)의 배출은 440명 이었습니다. 예전의 2~3배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뽑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술사 공부를 그때하지 말고 요즘 했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도 적잖게 있습니다. 의사, 약사, 건축사등 이러한 시험은 응시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 배출을 적절하게 하여 예전대로 한해에 해당 시공기술사를 200명 이내로 배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며 기술사들의 입지도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과학기술인력과]

- 현재 기술사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하여 기술사를 배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사법'을 통하여 기술사에 대한 관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기술사 배출에 대하여는 교과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매년 관련 분야의 의견수렴과 연도별 배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에 대한 등록규정이 없어 기술사의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바, 기술사의 실질적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퇴직 후 기술사 교육 훈련 이수에 관한 문의

질의

-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안내공문을 받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본인은 기술사로서 현재 기술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공무원 재직 중에는 기술사면허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교육훈련이 면제되고 공무원 퇴직 후 현업에 취업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요?
- 만약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16.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는 공공 부문의 시설안전 등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기술 자격자로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스스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이 본 교육훈련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 귀하와 같이 공직에 종사하시는 기술사들의 경우는 자격에 의한 특별채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대상이 아닌바, 교육훈련대상 제외 신청서(재직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교육관리 기관인 한국기술사회(Fax : 02-557-7408)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그리고 퇴직 후 현업에 취업하실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고 취업시점을 전후하여 1년 안에 45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법의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100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점의 대부분은 업무활동, 각종 세미나 참가 등 자율학습을 통한 교육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사 교육기관 확대요청

질의

- 기술사법 개정으로 한국기술사협회에서 이제껏 없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변경했으나 교육기관의 선정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에 앞서 충분한 교육기관의 확보와 같이 시행되어야하나 서울지역에만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시는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더 늘리던지 지방에서의 교육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교육기관 선정 시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9. [과학기술인력과]

- 요청하신 지역의 교육기관 증설계획은 아직 없으나 한국기술사회에서는 각 지방지회와 연계한 지방 출장 교육을 통하여 지방 기술사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E-learning센터: www.kpeaedu.com)이 2009년 8월에 오픈 되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면 시간적, 공



간접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사 교육비를 사업주가 거부해 개인 사비로 교육을 받을 경우

질의

- 저는 토목을 전공하고 토목시공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토목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술사법5조3항에 의거 회사 측에서 기술사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저의 기술사교육비부담(36만원)을 거부한 상황이고, 2010.7.27일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학점24학점을 받지 않을 경우 저의 개인 경력에 손실이 올까 하여 제 개인사비로 일단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우선제가 개인사비로 교육비부담을 하더라도 교육비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이런 경우 교육을 안 보아도 교육면제가 되는지
 4. 회사 측에서 저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대변해주지는 않는지?(예, 경고장 발부 등)

회신

회신일 : 2010. 6. 23.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르면,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술사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중 교육기관에 납부할 교육비 부담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교육비의 면제나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교육면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교육비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중 일부로서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기술사법의 취지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는 기술사법의 기술사 교육훈련제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훈련제도의 취지가 개인의 능력향상에 있으므로 그 결과(성과)가 사용자에게도 혜택이 있음을 알려주어 경비를 부담하는데 협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본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귀하께서 소속된 회사에 송부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우리 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술사회(교육본부 02-3288-3781~5)로 연락주시면, 해당 회사로 사용자의 교육훈련 경비 부담에 대한 안내 문 등을 송부해 드릴 것입니다.

기 술 사 교육 학 점 이 수 문 의

질 의

- 기술사를 취득하고 업무에 임하는 중에 90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참고로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8~10)년에 의해 한국기술사회에서는 08.10.15일 부터 기본 및 전문교육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줄 압니다.
 1.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90학점을 10.07.26일까지 받지 못하면 개인과 사업장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2. 사업장만 과태료를 받는다면, 사업장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개인은 90학점은 이수 안해도 되는지
 3. 과태료 납부 후 개인의 기술사 자격에 대한 제제가 있는지
 4. 과태료 미납부 시 개인의 기술사 자격에 대한 제제가 있는지
 5. 사업장이 시간 및 교육비를 개인한테 주었는데 개인의 사정상 교육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이 기술사회로 이관되는지
 7. 이관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연회비(2만원) + 한국기술사회 연회비(10만원)을 납부하여 정회원으로 경력을 관리해야하는지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현장견학(8시간), 건설영어회화(40시간), 건설기술 강좌(21시간)는 어느 정도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9. 어떤 주체의 세미나, 학술대회가 참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10.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과학기술인력과]

[Q1~2] 과태료 처분 - 과태료를 납부하면 교육이수는 안 해도 되는지?

[A] 현재 최소한의 법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고용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학점의 대부분은 업무활동, 각종 세미나 참가 등 자율학습을 통한 교육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점 취득에 어려운 점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Q3~4] 과태료 납부 또는 미납부시 기술사 자격에 대한 제제 문의

[A] 현재 기술사법에는 과태료 처분 외에 다른 제제 조항은 없습니다.

[Q5] 사용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 및 경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술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교육 받지 않은 경우

[A] 교육훈련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매달 각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사오니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바쁘실 경우 인터넷 교육을 권해 드립니다.

[Q6~7] 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련

[A] 경력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술인협회나 기술사회 어느 쪽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교육학점 중 기술업무활동 관련하여(2학점/개월, 최대36학점 인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경력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한국기술사회(교육실적 관리기관)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되며,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회원가입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8] 타 기관 교육학점 인정

[A] 기술사 교육과정은 지정된 교육기관(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 호남교육원)에서 필수교육을 최소 24학점만 이수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법정직무교육, 기타 수강교육 등 자율학습을 통한 교육들을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기술인협회의 교육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셨다는 가정 하에 현장견학(8시간)은 '0.6학점/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 × 0.6 = 4.8학점이며, 건설영어회화와 건설기술 강좌는 법정직무교육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되며 법정직무교육으로 판단될 경우

1학점/시간(최대 60학점 인정), 그렇지 않을 경우 0.6학점/시간(최대 18학점 인정)으로 인정됩니다.

※ 상세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교육관리 기관인 한국기술사회에 문의(www.kpea.or.kr, 02-3288-3781~5)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9~10] 세미나, 학술대회 등 학점인정

[A] 세미나 학술대회 등은 기술사회, 관계학·협회(학술단체, 공익법인 포함),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 공식 개최한 기술관련 교육(세미나 등 포함) 모두 학점인정 가능하며(0.6/시간, 최대 18학점 인정), 증빙서류는 참가증, 수료증, 서명부 사본 등 참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이면 어떤 형태도 가능하십니다.

기술사 교육학점 관련 문의

질의

- 화공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최근 기술사법이 바뀌어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는 [기술사법 제 5조의 3, 1항] 및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3년 마다 수강교육 및 자율학습 교육을 9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기술사가 취득해야 하는 90 학점 중 [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있는 [별표 2]에 의해 전문 교육 및 기본 교육을 각각 12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보면 학점 취득을 위해 기술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학점을 받으려고 하니 화공기술사로써 전문교육과 기본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있는 [별표 2]에 의한 “전문 교육” 및 “기본 교육”(각 12학점, 합 24학점)이 기술사가 3년 마다 취득해야 하는 90학점 중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화공 기술사”의 경우 전문교육(12학점)이나 기본교육(12학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문의 하니 한국기술사회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로는 화공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등록된 교육 기관이 한국기술사회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의무학점 성격인 전문교육이나 기본 교육(각 12학점, 합 24학점)을 [기술사법 시행령 제 14조]에 나와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것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예) 한국고분자학회나 한국화학공학회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의 어느 각 호에 해당 되는 기관이지만 교육 기관으로 지정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때 한국화학공학회(화공학회)에서 실시하는 기술 교육을 “화공기술사”가 교육을 수료 했을 때 이것은 전문교육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 참고 : 한국화학공학회(화공학회) <http://www.kiche.or.kr>

* 한국화학공학회는 화공학회라고도 불리며 화학공학(화공)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화공분야 전문 학술/기술 단체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8. [과학기술인력과]

○ [질의1에 대한 답변] 기술사의 교육훈련의 종류는 수강교육과 자율학습활동, 2가지로 나뉘며 수강교육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 2호(교육훈련의 인정기준)에서 3년간 90학점 중 기본, 전문교육의 학점이 각각 최소 12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09호(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전 분야 기술사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기술사회가 지정되어 있고, 건설 분야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교육원과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사님이 질의하신 화공기술사의 수강교육 교육기관은 한국기술사회이며 현재 소수종목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교육(12시간, 2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러닝센터를 오픈하여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질의3에 대한 답변]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필수 수강학점은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화공학회의 기술교육은 자율학습활동(66학점) 중 ‘그 밖의 수강교육’이란 항목으로 교육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02-3288-3781~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교육 훈련에 방 재 분 야 특 수 전 문 교육 과정 이 포함 되는 지

질 의

- 제가 자연재해대책법 상에서 협회 설립 근거가 있으며 방재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재협회에서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과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기술사 교육훈련에 포함이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 그리고 교육시간이 180시간이었는데 그럼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하여 “기술사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중 일반적인 기본교육(수강시간 당 가중치 1)을 적용하여 90시간을 다 인정받게 되는 건지요?

회 신

회신일 : 2009. 9. 30.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 교육훈련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지정된 기술사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으신 교육만 인정 가능합니다.(지정된 기술사 교육기관 :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
- 귀하께서 이수하신 교육은 기본, 전문교육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율학습으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 법정직무교육일 경우 1학점/시간, 최고인정학점 60학점까지 인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밖의 수강교육(0.6학점/시간)으로 분류됩니다.

기 술 사 교육 훈련 '직무수행하는자' 의 범위

질 의

- 기술사 교육훈련 이수 안내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술사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는?

회 신

회신일 : 2009. 10. 8.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관련 업무를 하시는 기술사는 모두 교육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훈련 비대상 적용 세부기준

직종구분	교육훈련 대상 세부기준	
	대상	비대상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 및 소속 기술사	○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할 경우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채용 시 기술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예시)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2항 관련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관련 특별채용 자격기준 등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기술사 자격 보유와 관련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소명하여야 함)
공공기관 소속 기술사	○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기술직으로 참여하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따라 직무 등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신고하는 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다음 각 호에 소속된 기술사로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겸임교원으로서, 기술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1. 겸임교원 2. 명예교수 3. 시간강사 4. 초빙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명하여야 함)
건설기술자 (감리사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사인 경우	○건설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를 퇴사한 경우, 퇴사일 부터 건설관련업체에 신규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 (소명하여야 함)

직종구분	교육훈련 대상 세부기준	
	대상	비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설업자 2.«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감리전문회사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5.«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6.«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7.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8.«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9.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10.«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11.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사 포함)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자 (감리원포함)	<p>○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으로서 기술사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감리업자 포함)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 	<p>○전력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소속업체를 퇴사한 경우, 퇴사일 부터 관련업체에 신규 취업일까지 교육훈련 대상 제외(소명하여야 함)</p>



직종구분	교육훈련 대상 세부기준	
	대상	비대상
	<p>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p> <p>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기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p>	
<p>각종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 기술사(임직원) ○소방시설공사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임직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소속 기술사(임직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소속 기술사(임직원) ○기타 법령에 따른 기술관련 업체에 소속된 기술사(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으로 근무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감리등 기술사 직무와 관련한 성과품 등에 책임기술자로서 명날인을 하는 기술사 ○각종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 등을 규정할 때, 해당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요건으로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

● 해외 파견근무 중 기술사 교육이수 의무

질의

- 2004년도에 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술사법이 변경되어 교육을 3년에 90학점씩 이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저는 지금 중국의 북경에 파견근무를 나와 있어 교육이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와 같이 해외거주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또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면 어떤 서류를 어디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30. [과학기술인력과]

-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해외근무기간은 교육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훈련 실적 관리기관인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인사발령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교육이수 의무기간 중 해외근무기간은 제외됩니다.
- 이메일이나 팩스 등의 송부도 가능하오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기술사회(www.kpea.or.kr, Fax : 02-557-740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학점이수제도 중 대학원학점은 인정 안 되는지?

질의

-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내에 90학점을 이수하도록 법령에 의해 올해 7월 이전까지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저는 97년에 환경기술사(대기)를 취득한 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학점과 관련하여 기술사회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졸업한 이후 여야만 해당 학점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교과부에서 정한 세부 지침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재학 중인 상태의 학점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0.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 및 「기술사 교육훈련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사님이 공학(이학포함)계열 및 경영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신 경우, 이수시점(학위 취득 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기술사 계속교육 기간 내에 대학원에서 이수하신 학점에 대해서 취득 학점당 10점씩, 최고 60학점 까지 기술사 계속교육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활동에 대하여 중복 학점인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중치도 높고, 최고 60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만약 이번 연차에 인정을 못 받으셔도 다음 회기연도에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수료)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시기를 학위취득이 아닌 수료시점으로 보는 것은 박사학위의 경우 학위취득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사 교육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교육훈련실적보고서식 중 대학전공교육(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을 작성하시어 한국기술사회 교육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 교육훈련 실적신고안내 참조)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1년의 유예기간) 개정 건의

질의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교육훈련 대상을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1년이 지난 날(기산일)부터 그 학점을 인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으로 인하여, 저와 같이 자격취득 후 1년 이내의 논문발표, 학회참여, 관련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교육훈련 해당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련 모든 학점이 무산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동교육 훈련기간으로 해당되지 않는 점(이수학점 비인정)을 이유로, 학회참여 등에 비적극적으로 권장(참여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25. [과학기술인력과]

- 기술사 교육훈련 대상(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의 교육기산일은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 동안의 학습을 인정하여 최근 개정('10.10.13)된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이는 자격을 취득하신 신규기술사분들에 대한 학점인정 규제가 아닌 혜택이라는 시각에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3년간의 기산일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고, 주기적으로 오는 지식의 반감기, 그리고 국제 기준(APEC엔지니어 등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 : 3년 150학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질의

질의

-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영어는 텡스 성적으로 대체되고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되는데
 1. 한국사능력시험을 올해시험에 응시해도 인정되는지 여부와
 2. 각 영역별 점수배점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1. [과학기술인력과]

- 교과부는 그 동안 시행오던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 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선발횟수는 2011.09월 예정이며 정확한 날자는 2011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과 영어 TEPS 시험성적은 시험 시행 공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성적을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 올해 보는 시험성적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시험 시행할 경우 당연히 인정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국사 과목은 3급 합격 여부만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성적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과목별 점수 배점은 (현행) 영어 300, 국사 100, 학부성적 100, 대학원성적 200 합계 700점을 만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개선) 영어 300, 국사(3급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만 부여), 학부 성적 100, 대학원성적 200 합계 600점을 만점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어시험 과목에 있어서는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4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과학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 국립서울과학관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협소한 공간에 전시물만 가져다 놓는 것으로 끝인가요? 이러한 일을 설문조사 한번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는 다른 건물로 가야지 창경궁이 다 보이는 국민들의 교육기관으로 이전하는 지 정말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과학관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슬픕니다. 과학의 문을 통해서 창경궁과 과학관을 모두 구경하고 아이들에게 교육기관도 같이 있는 과학관은 서울의 자랑이었는데 변변한 과학교육기관도 없이 좁은 과학관을 상상해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리모델링 공사를 두 곳 모두 하는 비경제적인 처사를 국민들이 모르기 망정이지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국과학의 암울한 미래를 서울과학관운영의 단면만 봐도 불 보듯 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과학관운영정상화와 과학교육기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재청이 다른 건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세종로 정부 청사 쪽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경궁과 종묘 창덕궁등 문화재사이에 끼어 있어야 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6. 8. [과학기술문화과]

- 서울과학관이 축소된 것은 현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교과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에서는 현 특별전시장을 11월 중순까지 리모델링하여 상설전시관의 전시품을 이전 전시할 계획인 바, 전시품을 엄선하여 체험과학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교과부는 서울 강북 및 수도권 북부지역에 과학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함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서울과학관을 강북지역으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 서울과학관은 4D영화관, 첨단 산업관, 체험 교육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첨단 과학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니, 그동안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수업목적 복사 이용 가능한지

질의

- 개정된 초등학교 3,4학년 읽기 교과서를 새롭게 한자혼용교과서로 본교 교사들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 국정교과서를 흑백 복사하여 필요한 낱말만 한자로 변환하여 한자혼용교과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저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pdf 파일 형식의 개정 교과서를 얻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물론 제작된 혼용교과서는 상업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본교 아동 교육용 보조 교재로만 사용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4. [과학기술기반과]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36조에 의하여 “수업목적”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복제 및 번역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pdf 파일 형식의 교과서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교과서를 pdf 파일로 제작할 경우 원저작물(교과서에 수록된 지문,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책을 전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사회인 대학원생이나 석사 2년, 박사 3년의 수업연한을 지난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쓸 수 있어야**
질의

- 대학원에 진학한 석,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교과부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관리지침 제11조⑤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4. [기초연구과]

- ‘학술연구구성사업’은 학술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과 연구”를 연계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학술연구과제 지원의 목적에 학문후속세대 및 고등연구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전일제(풀타임)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일제 연구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연구보조원은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 등의 사유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제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조항은 우리 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BK21사업’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2009년부터는 이공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취업 상태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도 연구보조원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외 연구수당, 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및 교내 안전관리규정 문의

질의

- 실험실안전관리규정과 교내 안전관리규정이 각각 제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규정을 통합하여 캠퍼스안전관리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내에 있는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또한 캠퍼스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 시 연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26. [기초연구과]

- 실험실안전관리규정과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통합 운영 가능 여부
상기 규정을 통합운영 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작성, 비치, 알람에 대한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단독으로 제정·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내에 있는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또한 캠퍼스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 시 연안법에 위반되는지?
- 법 제6조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명칭을 변경·운영하여도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6조5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연구 활동 종사자(1/2이상 포함)를 지명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요건에 만족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인지

질의

- 국공립대학교에서 법인으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국공립대학교 국가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7.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법인이지만, 대학의 하부기구입니다.
-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게 되므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계약에 있어서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안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대학교내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

질의

-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부속시설로 분류하여 설치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 대학만이 본부 조직으로 분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산학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대학 내 기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혹시 부속시설로 운영할 경우와 본부조직으로 운영할 경우의 운영상의 특별한 제약사항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 외에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교비 회계과 분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산학협력단 운영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1.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업무, 하부조직, 단장 및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관련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산학협력단 개교 전 설립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저희 대학은 인가를 받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년도에 교수님들이 수행하실 각종 연구과제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조속히 학칙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제가 학교기업협의회에 찾아가서 여쭙어 보니 개교 이전이라도 인가만 났으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최소한 법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 부처인 교과부 주무 과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 법률에 의거하면 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여 취임승낙서와 정관 등을 준비할 수 있다면 개교 전이라도 산학협력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16. [학연산지원과]

- 대학설립을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이라면 이미 법적으로 법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학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교전이라도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학교규칙, 정관,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장 임명권자)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계약, 선금지급 등 질의

질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산학협력계약)

1.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그 업무(계약)의 범위는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선금금 신청 시 자치단체별 채권확보차원에서 선금보증서를 발급제출토록하고 있으나,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로(보증서제출의 면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09.08.06 에 산학협력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별도 근거가 있는지 문의)

회신

회신일 : 2009. 10. 05.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므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산업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의 계약 역시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계약이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산학협력에 관한 정의에 따라 계약건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국가기관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은 계약 권리의 주체인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겠지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로 귀속됩니다.
- 선금보증서 제출의 면제 여부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선금의 지급'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증서제출 면제 기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자본금 출자 가능여부**질의**

-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07년부터 '10년 까지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RIS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2단계에는 사업화(법인화)하여 자립화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자체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산·학·관이 다 참여하는 법인 설립을 결정하여 지역 기업과 군과 대학이 법인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법인설립에 있어 자본금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기업 및 학교에서 자본금을 출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특허에 대한 기술이 전료는 계약을 통해 따로 받을 예정임)
- 본 사업을 통해 국립 일부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출자를 받아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는데 대학별로 상이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수익사업을 하는 일반 유통법인이나 자회사(산학협력분단)에 자본금 출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법인에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주식취득 및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유통법인은 설립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회계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집행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유통법인은 설립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회계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집행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에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9.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수익사업을 하는 일반 유통법인이나 자회사(산학협력분단)에 자본금 출자가 가능한지?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제32조(지출)에 의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외의 법인에 자본금 출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법인에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주식취득 및 투자가 가능한지?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제32조(지출)에 의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주식취득 및 투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유통법인은 설립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회계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집행한다는데, 가능 한지?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제32조(지출)에 의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외의 법인의 설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 [참고자료] 관련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산학협력단소속)의 비정규직 행정요원이 다른 사업단에 채용될 수 있는지

질의

- 학교(산학협력단소속)의 비정규직 행정요원이 2년 계약 종료 후 동일 대학 내 특정 연구 사업단(예, 과학재단 등의 SRC, MRC, RRC 등)의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 법적용 없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0. [학연산지원과]

-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 필요합니다.
- 동 민원의 논점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단과의 관계와 산학협력단 사직 시 퇴직금 및 4대 보험의 정산 관련 사실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법인)과 국책사업단(비법인)은 회계 상 연계되어 있으며, 인사와 노무관리는 학교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직으로 본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퇴직금 등 정산 시 근로관계 단절의사 여부에 따라 재취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또한,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단이 별개로 단절된 기관으로 볼 경우는 새로운 고용관계가 가능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비정규직법 등을 담당하는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02-2110-7402~7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위원소 일반면허 취득사항 조회

질의

- 면허 발급은 교과부에서 하고 큐넷에서는 위탁해서 동위원소 일반 면허를 시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면허 취득사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8. 25.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취득사항 조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등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자력관련 면허시험에 관한 취득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자력관련 면허시험(<http://licence.kins.re.kr>)
면허자·국가기본자격조회(왼쪽 중간)/성명·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입/이력조회

☉ 방사선동위원소 면허증 재교부

질의

- 면허 재교부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7.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증 재교부를 위해서는 사유서,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수입인지(2,500원), 사진이 있으시면 됩니다.
 -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 재교부 양식은 첨부로 붙여드립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로 가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실국마당(왼쪽 중간)
 - 원자력국
 - 정보자료실 6번 별지 제92호 서식(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

- 수입인지(2,500원)는 우체국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자료들과 사진은 우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관리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7층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 재교부

질의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을 재교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교부 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1일로 되어있는데요, 방문접수를 하게 된다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2.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증 재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재교부 신청 처리기한은 1일이며, 접수된 서류 검토, 내부결재, 직인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유서, 면허세 영수증 등이며, 양식은 상기 “면허증 재교부”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정보자료실 7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생산 인허가

질의

-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성능시험을 거친 후 수출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 원자력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부품형태로 가지고 나가 외국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내 원자력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31. [방사선관리과]

-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방사선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방사선기기의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조립하고, 성능 시험하는 것은 현행 원자력법의 규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화학탐지기 도입에 관해 문의

질의

- 화학작용제 탐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탐지기 안에 분석을 위하여 100MBq의 Tritium(H-3) 동위원소 내장되어 있다는 원제작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탐지기의 탐지 방식은 IMS(Ion Mobility Spectrometry)방식입니다. 이 장비는 비파괴 장비처럼 방사선을 외부로 방출하여 물질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안 챔버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는 장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자력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1. [방사선관리과]

- H-3의 수입 및 판매 총량이 1×10^9 Bq이하라면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2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및 교과부 고시 2009-37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에 따라 신고면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상기수량(1×10^9 Bq)을 초과하는 H-3을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제 65조에 따라 판매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 문 대 학

● 사립전문대학에서의 총장선출시기 문의

질의

- 사립전문대학에서의 총장 선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5.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대학 총장의 선출 시기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립대학 총장의 선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까지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 사립대학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3에 규정에 따라 임용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 3분의2의 의결을 거쳐 교과부 장관이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교과부는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체적으로 사립대학의 장의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일의 30일까지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복지과로의 과명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실버케어전공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복지” 명칭이 직접 사용되는 복지(학)과로의 학과명 변경 시에도 “보건, 의료, 한약, 한의 및 교육관련 학과”처럼 과명 변경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전문대학정책과]

-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8조, 제57조 등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정원 증원 없는 학과의 폐지, 분리, 소속, 명칭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 한약, 한의학 및 교육 관련 유사학과 명칭은 학생 피해, 자격(면허) 발급 관련 민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용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학과명칭 변경 관련하여서는 대학 내 구성원의견 수렴 등 대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학사 학위등록 절차문의

질의

- 행정학과(2년제)를 1978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학위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요즘 전문학사 학위가 필요하여 학위등록을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2. [전문대학정책과]

- 졸업 시 전문학사는 교과부에 등록되지 않고, 해당대학에 등록하며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졸업 시 부여하는 것으로, 졸업증서번호와 학위등록 번호는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부여됩니다.
- 고등교육법 부칙<제5439호> 제9조에 의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졸업하신 대학에 문의하시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개 교육과정 운영학과 2개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 하나의 학과이면서 교육과정을 2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본부에서는 이를 한 개 학과로서 취급하므로, 저희학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어 정말 하나의 학과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14. [전문대학정책과]

- 하나의 학과에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여 2개 이상의 학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개 학과로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학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학과 재개설시 재임용 탈락사유가 되는지

질의

- 저는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폐과 후 학과 재개설 시 각서를 요구하며, 불응 시 학과 개설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과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에도 재임용 시에 탈락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 [전문대학정책과]

- 학과의 설치, 폐지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8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교육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의료관련과 및 유아교육과 등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 없는 학과의 신설, 폐지, 분리, 소속, 명칭 변경 등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전년도 교원확보율이상 유지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내지제8항, 제56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소송비용 교비지출 가능여부

질의

- 사립전문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과 법인의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일로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파면, 해임된 교직원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1.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원 및 직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제70조의 2에 의하여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사회 의결)에서 임면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명칭변경

질의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명칭변경(“시각디자인학과에서 “산업디자인학과로)을 위한 행정절차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0. [전문대학정책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그 모집단위가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문학사과정 명칭이 변경된다면 학사심화과정의 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교과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존의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색이 있어서 학과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학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자체내의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위의 개념과 종류 및 외국 Diploma 등의 학위 인정 여부

질의

- 한국에서 학위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싶고 전문학사가 분명히 정식 학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된 공식적인 법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할 경우 일반기업체,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학위를 제출한 경우 각각 위의 과정을 밟으면 정식 학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7.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에서 학칙에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해당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보통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시 학점인정 관련

질의

- 최근 전문대학에서 글로벌현장실습, 해외취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들이(전문대학 뿐 아니라 4년제 대학) 마지막 학기인 2학년 2학기 초(4년제의 경우 4학년 2학기) 국내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학점으로 대처하여 학점이 부여되고 졸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문대학 학생이 2학년 2학기인 9월 초 해외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2학기 학점인정이 이루어져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위 경우 학위수여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7. [전문대학정책과]

- 국내외 취업을 사유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 수업을 위해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칙에 근거를 두고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22조)

대학 및 대학원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특강, 시간강사는 들을 수 없는지

질의

- 비정규직교수 즉 시간강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수법 특강/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더군요.
- [문의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수법 특강, 워크숍 프로그램 등은 전임교원만 들을 수 있나요?
- [문의2] 만약 그렇다면 시간강사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회신

2010. 6. 28. [대학선진화과]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을 통해 귀 대학에서 추진 중인 교수법 특강/워크숍 프로그램은 교수법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임교수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 단, 동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상을 전임교원, 시간강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화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이 되는지

질의

- 국립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 국립 서울대학교는 사립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신

2009. 10. 7. [대학선진화과]

- 현재 정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명에서 보이듯이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될지라도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 서울대 법인화의 목적은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하나의 법인격체로서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 법인이 될지라도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기초 학문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안)은 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후 등록금 인상 여부 관련

질의

- 국립대학이 법인화된다면 그 대학은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가 인상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신

2010. 5. 17. [대학선진화과]

-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법인화 이후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서 정부는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진되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 시에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며,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기본 제어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폐교 시 학생처리 방법

질의

- 지난 2009년 5월 18일자 언론을 통해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6월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 11월께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제 자녀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신 2009. 7. 13. [대학선진화과]

- 우리 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상이 어려운 사립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개편,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통폐합 또는 폐교로 인해 특정 대학이 폐지될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여 통합대학 또는 인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영부실 대학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편입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대학통합사례 자료 요청

질의

-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대학통합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09. 9. 22. [대학선진화과]

-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로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조개혁 추진계획안(교과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일반공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청하신 ‘대학통합 사례에 대한 자료’라 함은 다소 포괄적이며 보유자료 중에는 대학의 중요 운영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민원을 통해 제공해 드리기에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원하신다면 교과부 홈페이지(정보마당 →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공개여부를 판단 후, 공개 가능한 자료들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대한 질의

질의

- 2010년 2월 26일자로 개정된 대학 설립 운영규정 개정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별표 1의 4 연차별 교원확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연차별로 달성 또는 유지해야할 교원확보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별표에 제시된 기준이 모든 대학이 지켜야할 최소 기준인지의 여부
 2.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조의3(학과 정원 등의 증설 증원기준)에 해당되는 증과 및 증원을 신청하는 대학만 적용되는 기준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0. 4. 6. [대학선진화과]

- 교과부에서는 경영난에 직면한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통폐합 촉진을 위해 기존의 통폐합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 별표1의4에 해당하는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관련 문의를 하신듯합니다.
- 첫 번째 문의 관련하여 개정령 별표1의 4에 제시된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모든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 두 번째 문의 관련해서도 개정령 별표1의 4에 제시된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제2조의3(학과, 정원 등의 증설, 증원 기준)에 해당되는 증과 및 증원을 신청하는 대학만 적용되는 기준도 아닙니다.
-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령에서 제시한 별표1의4 교원확보율 기준은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술대학의 대학역량강화지원사업 등에 따른 건의사항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 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로 구분하는 것을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예술대로 세분화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여 주시기길 요청합니다.
- 또한 졸업생 취업률에서도 예능계 출신의 경우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하여 전공 전문성을 살린 “소호창업, 자영업, 전업작가(프리랜스),뮤지션, 학원, 교습소” 등에 종사하는 실정이나 단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로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체 취업의 경우에만 정규직 취업률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지원사업 등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예능계 졸업생의 경우에는 예능계 특성을 감안

하여 정보공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회신 2010. 7. 6. [대학선진화과]

- 현재,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역별, 규모별, 대학 특성별(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구성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대학 특성별 지원유형에 예술대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전국 4년제 예술대학의 수가 3개에 불과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지원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졸업생 취업률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로 측정함으로써 예술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술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등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 교수의 겸임

질의

- 제가 아이디어를 낸 제품을 한 업체와 개발하고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나누자고 구두로 약속해 둔 상태입니다.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이 업체로 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을 계약서를 통해 공증을 받을 계획인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8.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 제6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중간 생략)...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각호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제25조 조문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교과부에서 단순하게 파악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하며, 영리업무가 업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있는지 등의 사실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 저촉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복무감독권을 갖고 있는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 등에서는 특허권 대여, 서적출판에 따른 인세 수입 등에 대해서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립대 조교의 시간강사 겸직

질의

- 국립대 조교가 소속대학에서 시간강사 겸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대학 내에서 조교로 임용하고 시간강사로도 계약이 가능한지요? 주간에 본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강의하겠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항은 학교의 장이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내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에 대한 전념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야간수업 등을 위한 근무시간외의 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정년

질의

-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정년은 몇 살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8.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질의

- 군대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병사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병사보다 교육훈련이 길고 심화 과정을 밟는 간부들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11. 19. [대학지원과]

-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학교에서 정한 학칙 및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점의 인정 및 범위 등은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학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전형 구분 수정

질의

- 제 입학구분이 실업계 특별전형 정원(내)로 되어 있어 입학 처에 입학구분이 상이하다고 문의하니 정원 (외)3%가 아닌 정원(내)로 지원되어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04년도 당시의 지원전형을 찾아보니 정원 외인지 정원 내 인지 전형내용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04년도에 실업계 특별전형이 새로이 생기면서, 수시1차 지원 당시 실업계 특별 정원 외 3% 전



형으로 설명을 받았고, 수시지원도 정원 외 전형으로 알고 지원하였습니다. 제 입학구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8. 28. [대학지원과]

- 전문계 특별전형은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대학교는 정원의 부담 없이 학생을 전체 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과는 별도로 더 추가하여 뽑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학사운영에 있어서는 입학전형이 정원 내(외)의 구분이나 차별이 없으며 졸업 시 취득하는 학위도 동일하게 수여됩니다. 입학구분의 수정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기 제도 관련 문의

질의

-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2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대학(2~4년제)에서 다학기 제도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1. 다학기(1년 3학기)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련법령이 있는지요?
 2. 특별한 법령이나 제한조치가 없다면 학칙에 근거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요?
 3. 3학기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최소 운영단위는 학교전체, 모집단위, 학과, 학과 내 일부 학생 등 어떤 형태든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7. 15.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0조 (학년도등) ②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에 의거 2,3,4학기 운영 모두 가능합니다.
-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 겸임교원의 임용기간

질의

- 겸임교원 임용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만 갖춘다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이지요? 적용해야 한다면, 임용기간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도 총 임용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9.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임’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겸임교원등’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필요시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법령상 횡수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학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선발인원

질의

- 보건계열 학과의 신입학 또는 편입학 정원 모집 관련 정원 외로 선발할 경우 몇 명까지 선발이 가능한가요? 입학정원 대비 선발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4. [대학지원과]

-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편입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제29조 (입학·편입학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대학 제도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 제도에 관해 몇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1.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졸업이수학점은 법률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2. 외국인유학생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2호 및 7호에 따라 모집인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하는 것인가요?
 3. 편입학 중 학사편입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3호가 적용되어, 정원 외 모집으로 간주되는지요. 그 경우 모집단위는 학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4. 편입학 정원에 관해 명시된 법률이 있습니까?
 5. 고등교육법 제 40조의 산업위탁교육을 맞춤형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 카이스트 등의 국공립 특수대학교는 대학 분류 시 어디에 속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3. 31. [대학지원과]

- 학위취득에 필요한 졸업이수 학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 별도 정원 제한 없습니다.
- 네. 정원 외 인원입니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2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의과대학

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편입학 정원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일반 편입학 여석에 관하여는 교과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하여 모집인원 산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고, 정원 외 편입학 모집인원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학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과학기술대학은 특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특수 법인으로서 대학, 대학원 수준의 '대학'에 속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 편입 전형료 부담 완화해야

질의

- 대학 편입 전형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8. 24. [대학지원과]

- 대입편입학 및 대학 입시 지원 시 전형료 책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나, 교과부에서는 전형료 책정 시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여 운영하되 전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학 휴학에 관한 문의

질의

-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금년 2월부터 타 대학에 편입학하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대학에는 휴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6. [대학지원과]

- 재학 중 타 학교에 편입할 경우 휴학 및 자퇴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휴학 시 이중학적에 해당됩니다.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학생회비에 대한 민원

질의

- 대학교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학생들은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14. [대학지원과]

-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갈등완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등록금 납입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한하여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기타 선택적 납부 경비의 통합고지를 하는 일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대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변하여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집행은 하지만 총학생회비 관리는 학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학생회 및 학과대표에게 건의하시어 학생회비의 공개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선택적 납부 경비는 통합고지 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다시 한번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같이 다닐 수 있는지

질의

- 현재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또한 올해(2010년 8월 예정) 학습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점은행에서 경영학과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학원과 대학교를 같이 병행하고 싶은데 이중학적 등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인지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14.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민원의 질의 사항인 이중학적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4항 관련 질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4항 조항에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의 교원확보율이 전임교원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초빙교원까지 포함된 교원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23. [대학지원과]

<관련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교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문의하신, 대학의 학생정원조정과 관련하여 학생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은 법령에 의해 전임 및 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교과부에서는 교원확보를 산정 시, 겸임 및 초빙교원까지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4학년 학과변경

질의

- 대학에서의 전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해 2.3학년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2004~2006년 사이 학칙에 의한 학과통폐합으로 폐과가 된 학과로 4학년 복학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29조에 의한 전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학칙이나 기안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4학년 복학 시 타 유사학과로의 모집단위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현재 4학년 재학생의 경우도 학과통폐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사학과로의 학과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8. [대학지원과]

- 사안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한 전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폐과가 된 학과로의 4학년 복학 및 야간 폐과로 인한 주간 변경 등에 대하여는 귀교의 학칙 및 학과통폐합에 따른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의 전과제도에 관하여 문의

질의

- 대학의 전과제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에 정하여 전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과제도가 없어 최근 전과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모집계열 즉 인문계와 예체능간의 상호 전과에 제한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19.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일명 전과)는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는 20%범위 안에서 허용) 따라서, 각 모집계열 즉 인문계와 예체능간의 상호 전과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집단위별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학생 이동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대학은 합리적인 허용 범위와 방법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전과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모집단위별로 평균평점예고제를 실시하거나 허용범위 설정 등 사전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학편입 시 학점인정에 관한 문의**질의**

- 87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91년 대학 편입 시에도 전체 이수학점을 대학교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72학점쯤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인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학의 학위를 받기위한 기준에 맞추어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점은행제도 시행하고, 열린 사이버대 등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학점의 인정은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여 글을 올립니다.
- 사이버대학에 편입을 하였는데 대학의 96학점 이수 가운데 72학점만을 인정하고 3~4학년 학업을 위한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보니까 편입 요강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 편입생들이 기존의 학점도 인정받고 시간과 노력도 절약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2. [대학지원과]

- 새로운 대학진학 시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에 의거 교육과정은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사항으로 대학자율화 중 교육과정운영의 자율화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대학교는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고, 군에서 취득하여 오는 학점도 많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등 외부 학점을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편입 후 전적대학 학점 인정 면에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각 학위별로 요구하는 교육과정상의 과목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신입학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현재까지 교과부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학 시에도 전공이 전혀 다른 학과로 편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퇴직금 지급조건(20년 이상 근속한자)

질의

- 폐과 후 기존 일부 교원의 경우 구조조정차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20년 미만 근속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의 결의로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2.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사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20년 이상 근속한 자)을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 보강 관련 규정

질의

-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간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으로 지정된 공적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공휴일이나 개교기념일로 인한 대학수업 휴강도 반드시 보강(토요일 등을 보강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8. [대학지원과]

-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휴업일)①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항②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보건계열(안경광학과)로의 전과에 대한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전과를 허가할 수 있고, 제28조제3항제2호의 나항에 해당하는 모집단위(의료기사-안경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1. [대학지원과]

-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전과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정원이 30명인데 모집(등록)인원이 28명이었을 경우 2008학년도 타계열에 입학한 학생의 2명까지는 전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총장의 자격

질의

- 부총장의 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의 법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정관에 별정직 부총장직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1. 별정직부총장을 신설할 경우 교원, 직원, 외부인 누구든지 임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교원, 직원의 임명이 가능하다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가능한 것인지, 휴직이나 겸직발령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9. [대학지원과]

- 부총장직의 신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대학의 정관과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다만,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부총장직으로 임명할 경우 이는 겸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겸임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대학 교수 신원조사, 신원조회

질의

-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31조 2항의 공무원임용예정자에 의해 경찰청에 의뢰하여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교수도 신원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외국인 신원조사의 경우 자국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서류준비에 3개월 이

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청에 신원조사 의뢰 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33조)중 금치산자 여부 등은 경찰의 신원조사와는 별도로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아 각 지자체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 신원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6.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에는 동법 제1항 제4호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대학은 (전임)교원 임용 시 국내·외인 구분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결정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질의

- 사립학교법 조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즉, 임용과 면직) 결정은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임면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당해교원의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재임용여부에 관한 임면권자의 결정 즉, 재임용결정 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위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면권자의 임면행위에 해당되어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결정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2.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 중 제1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을 포함한 교원의 임면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야간 이동의 모집단위 이동허용

질의

- 대학학무과-647(2006.02.01) 로 보내주신 공문에 의하면 '주야간 이동은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재적생기준)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



이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 이동 허용'(본교/분교 간 동일 학부(과)간 모집단위 이동도 동일하게 적용)이라 되어있는데, 2010학년도 소속변경 선발 시

- 2학년 선발인원은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서 3학년 선발인원은 20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건가요?
- 정원 범위 내면 정원 외 인원은 제외되나요? 아님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과별 총입학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2,3학년 소속변경 인원을 2,3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님 3,4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주야간 이동은 2,3학년 제적 자수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3,4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도 무방한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0. 3. 15. [대학지원과]

- 2학년 선발인원은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서 3학년 선발인원은 20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건가요?
☞ 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재적생 기준)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이 같은 학년으로 전과할 수 있습니다.
- 정원 범위 내면 정원 외 인원은 제외되나요? 아님 2009학년도, 2008학년도 학과별 총입학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네. 입학정원에 정원 외 인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2,3학년 소속변경 인원을 2,3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님 3,4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주야간 이동은 2,3학년 제적 자수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3,4학년 제적 자수로 산정해도 무방한 것인지?
☞ 전과여석 산정은 전과허용 범위(모집단위별 입학정원)내에서 당해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수와 당초 입학 시 미충원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일례로, 2학년 전과여석은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의 제적생수로 산정됩니다.

2학기제 변경운영

질의

- 우리 대학은 두 학기를 두며 매 학기 15주 이상 수업일수, 1학점은 1학기 간 15시간 이상 수업임을 학칙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의 학칙만 수정하면 두 학기 제도 틀 내에서 1

학점에 대해 15주 수업하지 않고 시간 수만 맞춰서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학점은 15시간 수업하면 됨으로 굳이 15주 수업을 하지 않고 약 8주내 15시간의 수업을 통해 1학점부여가 가능한지요? 일부 과목들은 약 8주간 수업 후 학점 부여해도 무방할 것 같은 과목도 있다는 교수의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9. [대학지원과]

- 학기 중 수업이 어려운 성격의 과목 등은 계절수업 등으로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22조로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 2학기제를 시행하면서 학기 중 시행령 11조(수업일수)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업을 운영한다면 교육과정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3호 규정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에서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도 국가기관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21. [대학지원과]

- 국립대의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으로 설립된 대학의 조직이면서 법인<산촉법(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으로 국가기관은 아니나,
- 산학협력계약에 한해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산촉법 제24조) 받아 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함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따라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 지자체가 국립대의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법적지위가 완전하게 국가기관이라는 의견에 전문가들도 이견이 있으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의원후보자격에 시간강사 교육경력 인정여부

질의

- 교육위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학의 시간강사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 [대학지원과] [대학선진화과]

- 교육의원후보자 자격에 관련하여
-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중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강사 경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교육위원의 후보자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학력 인정받는 대학 확인

질의

-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대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6. 15.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조회는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교의 사학연금 가입

질의

- 지방의 사립학교조교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였더니 학교에서 사학연금을 든 사람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학교 측에서는 교원으로 분류하여 처음 입사 시 연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설명과 동의가 없이 의무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특성상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힘들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 퇴직을 한 지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던 차에 사학연금은 학교 내에서 의무적 가입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 사무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것도 억울한데 비정규직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더 억울한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8. [교원단체협력팀,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입적용대상인 교직원은 교원뿐 아니라 사무직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등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학교의장의 발령에 의거 정식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교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른 가입적용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에 따라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은 사학연금을 관장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폐합 된 학교의 졸업학교명 기록

질의

- 00산업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00캠퍼스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대학교 총장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졸업학교의 이



력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지 않는 00산업대학교를 명기할 수 없기에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명시함이 적절한가를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31. [대학지원과]

- 통합으로 인하여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국립학교설치령 제2조(폐지되는 00대학교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00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00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되어 있으므로 △△대학교 졸업만으로는 명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00산업대학교 졸업(현 △△대학교) 또는 현 △△대학교(구 00산업대학교 졸업)로 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대학교 타 학교 야간대학 동시 수학

질의

- 4년제 주간대학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고 타 대학 야간대 문예창작과에서 동시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21. [대학지원과]

- 이중학적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각 대학과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및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입학담당부서에 반드시(꼭)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대학교수의 신분 유지

질의

- 사립대학교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학교수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3.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빙교원 정년.

질의

- 초빙교원의 경우 정년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전임교원에 준해서 정년



을 65세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9. [대학지원과]

- 국공립 대학의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빙교수, 명예교수와 같이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그 정년에 대해 교육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칙이나 별도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정관이나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편제정원의 의미 및 근거법령

질의

- 학생정원과 관련된 교원확보율에 관한 기초자료인 편제정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 원격대학 종합평가 결과 보도자료 인용한 자료에 보면 편제정원=각 학년별 정원을 합한 수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표현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3. [대학지원과]

- 편제정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상에 명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편제란 대학의 학년에 따라 정해지는데 2년제의 경우는 1~2학년의 직제이며 4년제의 경우는 1~4학년까지의 직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편제정원이란 각 각의 학년에 대한 입학정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엄밀하게 말하면 편제정원 = ‘입학정원*수학연한’ 은 각 학년의 입학정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학년의 입학할 당시의 학생정원을 합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 참고로 이 편제정원에는 정원 외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인원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편제정원(4년제) : 1학년 입학정원 + 2학년 입학정원 + 3학년 입학정원 + 4학년 입학정원

*편제정원(2년제) : 1학년 입학정원 + 2학년 입학정원

☉ 폐전공학생의 재입학

질의

- 폐전공학생의 재입학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2001년 제적된 A학과로 2009-2학기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전공학점은 이미 다 채워졌고 졸업학점에 2학점만 모자란 상태입니다. 다만 A학과는 2003년도부터 모집이 중지되어 현재 폐전공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유사한 전공이 없는 상황에서 4학년이라 전공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아니고 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규정상에 “모집 중지되는 다음의 학부 전공은 2007년 8월 31일부로 폐전공하며, 폐전공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제적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이 가장 유사한 전공에 이를 허용한다.”입니다. 이 경우 폐과인 A학과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4.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령상 폐전공학 생에 대한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학교내부규정에서 모두 다른 모집단위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생의 폐전공된 전공으로 재입학을 시키려면, 폐전공된 전공의 학생의 재입학을 원할시 다시 전공을 부활한다는 등의 학칙개정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사이버대 학력인정 여부

질의

- 중국에서 사이버대학을 나온 학생의 국내대학 입학이 가능한가요?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8. [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는 외국학교에 대한 학력인증을 별도로 검증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 인가된 학교에서의 학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의 교육과정 즉 12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소정의 서류(주재국 학교설립인가확인



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인정하여 대학수능 시험 및 대학입학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입학처에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학력인정 각종학교 명단

질의

- 시행령 9조1항1호-8호에 에서 언급한 정규대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현황과 인정되는 시기를 알 수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3.[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 인정한 대학과정의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한민학교(1984년 입학생부터 학력인정)와 순복음총회신학교(2010.3.1 개교 예정)로 2개 학교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 사항에 대한 확인은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교과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st.go.kr/me_kor/inform/statute/rule/index.js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인정한 순복음총회신학교는 동 고시에 반영하고자 현재 개정 작업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사 편입학 지원 자격 기준

질의

- 국내 정규 대학의 학사 편입학 지원 자격을 보면, 학사 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 자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일반 정규 4년제 대학교의 학사 편입학의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으나, 석사 학위를 받은 자의 일반 정규 4년제 대학교의 학사 편입학의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5. [대학지원과]

- 학사편입학의 지원 자격으로는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

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어학연수 학점인정

질의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기 또는 방학기간 해외 대학 및 해외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 어학연수를 갈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학생이 해외 대학 및 교육기관(사설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한 경우 대학이 정하는 학칙이 있을 경우 학점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5. [대학지원과]

- 국내외의 다른 학교란 당해 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된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사설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학교에서 정식학점을 취득한다하여도 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의거 해당학교의 학점을 인정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오니, 해당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B형간염 양성 판정자 사립대 기숙사 입사 제한

질의

- B형간염 양성 판정자 사립대 기숙사 입사 제한을 둘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3. 4. [대학지원과]

- B형간염 보균자 등을 포함한 개별 대학의 기숙사 입사제한에 관한 사항을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전염성이 없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거의 없는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해당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학 내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 권한이므로



교과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기본재산 교지의 정의

질의

- 교육용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교지와 교육용토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주변에 주택이나 토지를 교비로 사용하여 매입하였다면 교지가 되는 것인지요? 아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토지만을 교지라고 하는지 등 교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만 교지로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미결정된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조 (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③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국적을 달리하는 국외자도 사립학교법상 이사선임이 가능한지

질의

-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 임원구성 중 이사의 기준이 내국인만 되는지, 아니면 국적을 달리하는 국외자도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5. 28.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법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에도 임원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본재산 권리포기의 의미

질의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관할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의 권리포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권리포기”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라든가,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대체의학 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절차

질의

- 대체의학 전문대학원대학교를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립대학설립과정과 동일한지? 대학원대학과는 달리, 대체의학 대학원 설립에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2.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과정은 대학의 설립과정은 동일합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 후 대학설립인가) 대체의학 대학원대학의 설립요건은 대학원대학의 설립요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 대학 교내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가능 여부



질의

- 대학교 교내의 시설에 법인 자금을 투자하여 법인의 수익시설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예: 임대매장 등)
- 1.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법인의 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 지?
- 2.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여 수입을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한 후 일정액 공제 후 학교에 전출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지?

회신

회신일 : 2009. 12. 16. [사립대학지원과]

[교육용 기본재산 내 임대 운영사업의 허용 기준]

1.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2. 학생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들일 것
3.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것

대학교내 일반음식점 설치 용도변경

질의

- 대학교내 시설로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으며 세부용도는 휴게실(건축물관리대장)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21.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교내 복리후생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때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제1항 관련 교사의 구분 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도시시설계획 변경 등은 교과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에 게시되어 있는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 (2009년 6월) 21페이지에 의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학교법인의 명의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통상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지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6항에는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타 기관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 지자체가 조성중인 미등기 토지위에 공기업이 교사를 건축했을 경우 미래에 등기될 토지라고 한다면 대학설립인가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25. [사립대학지원과]

-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설립허가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하는지
 - ☞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은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6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제1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조성 중인 미등기 토지위에 공기업이 교사를 건축했을 경우 미래에 등기될 토지



이므로 대학설립인가가 가능한지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며, 동 조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립주체는 교지 및 교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설치전의 심의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1996년부터 설치되어 대학설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996년 이전에는 상기 위원회의 역할을 어떤 위원회에서 담당했는지 관련 규정과 연혁, 대학과 전문대학의 심의를 같은 위원회가 담당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6.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설치기준령에 의거 1955.8.4~1968.9.11. 까지 대학조사위원회가 존재하였으며, 1970.1.27~1980.2.4. 까지 대학시설조사위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의거 1979.1.1~1981.9.18. 까지 평가위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상세한 법조문은 법제처의 홈페이지-연혁법령검색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대학교의 분교설립

질의

- 대학원대학교에서 타 지방에 분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3. [사립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4조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4항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이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타 지방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의원자격

질의

- 대학평의원회 의원 중 한분이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 안식년(연구년 휴직)을 하게 되어 평의원회 의원 유지에 대한 자격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교수휴직에 관한 규정을 첨부로 하여 질의하오니,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호에서 휴직에 대한 문구를 휴직(연구년 휴직 제외)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총장의 최종 승인여부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의원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3.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평의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 법인의 정관은 제46조에서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에 의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은 교수 평의원은 휴직 및 퇴직 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면 교원인 평의원이 휴직(안식년 휴직을 포함)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휴직 시 평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가능여부

질의

- 외부의 종교기관에서 본 대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차시세는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종교기관에 임대 가능한지요? 임대가 가능하다면 주변시세 보다 매우 낮은 가격(약 1/5 정도의 시세)으로 임대를 요구하는 종교기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23.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거 학교법인 이사회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조에서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료를 일반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이사장 또는 심의 의결한 이사회가 배임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다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법적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활용

질의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자수익 운용목적)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학교에서 시설자금의 조달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지급이자발생액이 100원일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대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자수익운용목적)을 대역하여 지급이자를 50원 발생시킬 경우, 관련한 범조항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은 정상적 내부거래가 현행 교육법상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당초 이자수익 운용목적의 재산임으로, 이자수익의 감소발생은 예상이 되나, 자금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감소되며, 현행 거래관행 및 상법상 사업자간의 거래가 정상 발생됨으로 타법령-세법등-에서는 위배사항이 없습니다.)
- 위 내용이 위배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차입거래(내부거래)가 교과부 승인, 신고 등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 [사립대학지원과]

-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경비

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재산으로 운영수익의 80%는 소속 학교의 운영경비지원에 활용하고 20%는 법인운영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대학의 경우, 주된 재정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충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수입이 필요하며, 법인의 재정적 기여 없이 대학을 경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합리적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학교법인이 설치학교를 통해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에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발생한다는 것은 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및 법적(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기관으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님, 따라서 학교와 학교 법인 간에 금전대차 계약은 성립될 수 없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에 전출하는 사항은 관할청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대학원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법인으로서 대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도 특수대학원(문화관련 대학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8.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니면 대학을 설치 경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상으로는 귀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귀 법인이 학교법인이라면 정관변경인가 후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귀 법인이 학교법인이 아니라면 학교법인 신설 후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의 영리활동 관련 질의

질의

- 대학의 부설 의미는 교비를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교육용시설이라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봐야 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영어시험이 종이방식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컴퓨터 시험장소가 부족한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여 수익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학교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주요사업내역:
 - 전국적으로 시험 센터 운영(TOEFL, TOEIC, TOSEL, OPIC, TEPS, FLEX 등)
 - 컴퓨터 방식 시험 유치 운영
 - 미국공인시험: 간호사자격증시험 유치(연 3,000명 응시)
 - 미국공인시험: 회계사 자격증시험 유치(연 2,000명 응시)」
- 상기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면 부설연구소에서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의 어느 부서에 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대학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므로 영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 또는 학교기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회계에 한하는 것으로 민원사항의 사업형태를 막론하고 교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 교원으로 사학연금 가입

질의

- 사립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학연금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직이 있는 초빙교원이 교원 TO로 포함이 되려면 강의시간이 꼭 필수사항인가요? 강의시간이 필수라면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가입조건은 사립학교에서 정식으로 임용을 받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에 한하며, 정식 사립교원이 아닐 때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1항에 의거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립학교에서 정한 규정이 있기에 해당 학교로 추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및 중고등학교 직원 및 정년 적용**질의**

- 사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인사팀장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정관에 직원의 정년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75조(일반직원의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06.11.17 개정)

[정관 시행세칙]

제17조(직원의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1999.3.1개정)

1. 일반직, 기술직의 부참사급 이상인 자는 60세
 2. 일반직, 기술직의 주사급 이하인 자와 기타 기능직은 57세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고용직 직원은 55세
- ②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질문]

1. 국가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저희 정관은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법(노동법 : 노무자)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현재 정년 월이 학기말인 8월말과 2월 말에 정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보조금을 받는 중고등학교의 직원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월말과 12월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5. 31.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며, 퇴직일은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며,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퇴직일은 8월 31일 및 2월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담보대출 가능한지?

질의

- 사학기관 재무규칙에 보면 대학의 보증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대출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은 법인격이 아니라 재단을 통한 대출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통한 대출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3. [사립대학지원과]

- 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차입금에 관한 규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의 담보제공,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 및 재정 규모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질의

- 사립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학교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정관에는 수익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또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면 허가 주무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여야 하나요? 설립이 가능하면 지식경제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1.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여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법조문에서와 같이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46조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연구소의 설립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학교법인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임),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비영리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제24조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면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에 보면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理事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조3의 한문으로 된 이사라 함은 정이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 사립학교법24조2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는 정이사의 선임은 없는데 위위원회에서 정이사의 선임이 가능한가요? 임시이사 체제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4. 29.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관할청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사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이사는 정이사를 말합니다. 또한 정이사 선임주체는 관할청이며 사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으며, 사분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위의 조항과 아울러 제24조의2 제2항 3호,4호입니다.

학교법인 관계서류 서류보존기간

질의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된 학교법인 관계서류(학교법인 설립관계서류, 재산대장, 임원대장, 임원 취해임 승인서류, 재산처분관계서류, 정관변경인가 서류 등)들에 대한 귀 부의 보존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9. [사립대학지원과]

- 문의하신 문서 보존 기간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 학교법인 설립관계 서류 : 영구
- 재산대장 : 별도로 관리하는 재산대장은 없음
- 임원대장 : 별도로 관리하는 임원대장은 없음
- 임원 취해임 승인서류 : 10년
- 재산처분 관계서류 : 10년
- 정관변경인가 서류 : 10년

학교법인 관계서류 이관 근거

질의

- 학교법인이 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서류(학교법인 설립관계 서류, 재산대장, 임원대장, 임원 취해임 승인서류, 재산처분관계 서류, 정관변경인가 서류 등)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데, 이렇게 이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귀 민원인께서 언급한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의 범위

질의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2.6, 2000.8.3).

-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 3. 수입·지출총괄부
-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 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본 학교법인에서는 매월 법인산하 대학의 자금계산서와 재산증감보고서, 부속병원, 수익사업체의 자금계산서, 손익계산서, 재산증감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법인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 상기법령 52조 ②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의 범위가 상기에서 언급한 본 법인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자금계산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증감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외에 산하기관의 예금, 부채의 세부 명세 등도 별도로 제출받아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3. [사립대학지원과]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제2항」을 살펴보면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와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 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법인산하기관으로부터 매 월말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보고 받아 ‘수입·지출총괄부’,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총괄부에 기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식 및 사항은 「동 규정」 별지 41호 내지 42호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또한 문의하신 기재, 보관하는 ‘세부목록’은 「동 규정」에서 특별히 열거하고 있지 않음으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39조에 언급되어 있는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받아 보관하시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학교 설립방법

질의

- 신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자격기준과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25. [사립대학지원과]

- 신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상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학 등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교법인설립허가 후 대학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장이 학교법인 상임이사 겸직할 수 있는지

질의

-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에 보면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총장이 학교법인 상임이사(상근이사)는 겸할 수 있는지요?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보면 학교의 장(총장)은 이사로 겸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상근이사)로도 겸할 수 있는지 해서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2.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의 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상근”이사는 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근”이라는 의미는 소속기관의 업무시간 중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의 장이 일반적으로 학교와 법인의 업무를 상시 전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근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임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학교의 장을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심히 부당한 업무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전기금의 토지 매각

질의

-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인을 분리하면서 현법인은 대학만 관리하고 중고등학교는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이 필요한데, 이전에 독지가로부터 대학발전을 위해 기증받은 땅이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땅을 매각하여 신설법인의 출연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 [사립대학지원과]

- 대상 토지는 대학발전을 위해 기증받은 것으로 그 활용이 대학교육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신설되는 중고등학교 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그 취득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교비회계의 자산을 타 회계에 전출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재개발 시 신고

질의

- 의과대학으로 기부된 부동산 물건(토지+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재개발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조합설립 등 재개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재개발을 통해 현재 부동산의 변동(이전, 매매, 처분 등)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 설립 등을 포함하여 재개발 진행에 따른 사업인가, 관리처분 단계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본 의료원의 의사결정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23. [사립대학지원과]

- 기부(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며,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경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개발 조합에 대한 학교법인의 각종 동의가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에 관련, 영향 또는 예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여부입니다. 절차를 준수한다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5.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 재산관리 업무 매뉴얼’에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매도 및 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 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
 - 다만, ① 학교이전, ② 본교와 분교 통합, ③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매도허가가 능하나, 처분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함
-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 등의 처분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등의 처분은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처분을 허가하되,
 - 당초 취득재원을 확인하여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처분 허가
 - 교비회계에서 출연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여 교비회계 자금이 타 회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교비회계는 타 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강제경매 금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개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됨(대법원 제2부 72.4.14 결정 71마330)

○ 재산 처분 시 사전신고 사항(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손실보상금의 용도를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허가 필요

-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의 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학교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질의

- 학교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자체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위탁 공고시에 목적사업명시 여부를 고려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학교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학교운영인데 사회복지시설 위탁공모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6.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립·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설립 목적이 다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사

회복지시설사업을 규정할 수 없으며,

- 또한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영리가 아닌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사업의 특성상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만 두고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에서 부속기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해임 의결된 구이사의 긴급사무 처리권

질의

- 학교법인이 구이사들의 긴급사무 처리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가 운영되는 경우 예전에 해임 의결된 구이사도 긴급사무 처리권이 있는지 여부
- 만약, 구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전에 해임 의결된 구이사에게도 그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4. . [사립대학지원과]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선임 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대 논문심사 경비에 관한 건

질의

-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박사학위)을 5인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고등교육법시행령규정)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는 외부 심사 위원에게 교통비 등에 대하여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30.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된 심사료를 일반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는 실비의 심사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서 대학의 장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 무논문 학위과정 관련 규정

질의

- 우리나라 대학들의 대학원 무논문 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교과부 관련 규정 또는 정책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21.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수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의 재적생에 대한 범위 해석

질의

- 일반적으로 재적생이란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본부의 입장은 재적생에 수료생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대학원지원과]

- 재적생의 범위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학칙, 학사규정에 의해

해당대학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학원 입학정원 관련

질의

-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관련 : 본교 대학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1년에 단 한차례 9월경에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경에 조정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반드시 2학기에 하는 것은 아닌지요?
- 사이버 강의 관련 : 대학원에 필요한 경우 일정부분 사이버 강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사이버대학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이버 강의가 가능하다면, 혹시 어느 정도의 사이버 강의 비용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9.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에 의해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4조(대학원위원회)의 내용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에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교 학칙의 수업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원 연구생의 학점 인정

질의

- 대학원 연구생의 학점 인정관련 연구과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26. [대학원지원과]

- 대학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제한 것으로 연구과정과 같이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학원 이중학적에 대한 질의

질의

- 대학원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대학과정은 이중학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원의 경우 이중학적이 가능한지요?
- 즉, 2개의 대학원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지, 학위인정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주간으로 혹은 계절로 수업을 겹치지 않게 이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8.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정원조정관련 문의

질의

- 2010학년도 대학원정원조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대학에서는 대학의 전략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특수대학원의 통폐합을 포함하는 대학원정원조정안을 계획 중에 있는데, 최근 경쟁력이 약화된 교육대학원(입학정원 80명)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특수대학원 신증설 또는 일반대학원 증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5.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 총입학정원 범위 내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의 정원 조정은 학과신설 기준 등을 충족하고,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이상 유지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별 또는 석·박사학위 과정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원 편입생 산출 연도

질의

- 2010년 대학원 정원이 100명인 곳에서 6학점을 인정하여 2학기 대학원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2010년의 정원에서 그 결원을 산출하는 것인가?
- 2010년 대학원 정원이 100명인 곳에서 12학점을 인정하여 3학기 대학원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2009년의 정원에서 그 결원을 산출하는 것인가?

회신 회신일 : 2009. 11. 16.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30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학과 설립에 관하여

질의

- 대학원 학과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원 학과(A)에, 동일단과대학(학부) 내의 학과(유사전공)(B)와 통합하여 학과(AB)를 운영할 수 있는지?(A, B 소속교원들을 AB학과의 소속으로 볼 수 있는지?)
 2. 새로운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시, 학부의 학과와 상관없이 유사한 단과대학내 여러 학과(A, B, C, D)를 통합하여 학과를 신설하고, 학부 해당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5. 6. [대학원지원과]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원 학과(A)에, 동일단과대학(학부) 내의 학과(유사전공)(B)와 통합하여 학과(AB)를 운영할 수 있는지?(A, B 소속교원들을 AB학과의 소속으로 볼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대학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그간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되었던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아래 관련조항)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 내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은 가능하며, 아울러, 그 소속교원들은 그 과정(학과)의 소속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 2. 새로운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시, 학부의 학과와 상관없이 유사한 단과대학내 여러 학과(A, B, C, D)를 통합하여 학과를 신설하고, 학부 해당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교과부는 전공 영역의 특성상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간 융합을 통한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협동과정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일 학과 성격이 세분화된 과정이나 기존의 학과 내에서 전공으로 공동운영이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는 향후 이행점검 시 불인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도 더불어 알려 드립니다.

대학원간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입니다. 현재 두 대학원에 합격한 상황이고,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아 같이 다니고 싶은데, 이중학적이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대학-대학 간에는 이중학적이 불인정한다는 건 들었지만 대학원간에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대학교 현황 요청

질의

- 우리나라 전체 대학원대학교 현황을 요청합니다. 학교 명칭, 학교 위치, 학과 구성, 편제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대학원대학교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3. [대학원지원과]

- 원하시는 자료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이트의 대학별검색에서 유형을 선택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생 제적처리 件

질의

- 현재 2학기 재학 중인 유학생(몽골)이 허위학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적처리를 할 경우 이 학생은 우리대학교대학원에 학적이 남게 되어있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학적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학생이 추후에 학적자료를 사용할 것에 대한 대비) 만약 입학취소를 할 경우 고등교육통계자료에 이미 재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 조차도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 [대학원지원과]

- 교과부에서는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 시기, 전형유형 등에 따라 각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전형방법, 전형자료 및 동 전형기간 내 선발시기 등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교과부에서는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학교 측에 그 귀책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력을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로 이뤄진 선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간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진학방법

질의

-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해서 궁극적으로는 간호대학원 간호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현재는 전문학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독학사란 제도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대학원 진학에 불리한건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독학사로 대학원진학이 가능한 곳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10. [대학원지원과]

- 독학사로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원 진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의거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인정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등학력으로 인정받아 대학원 진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원학위문의

질의

- 일반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전공하고 있는 전공 외에 계절제로 방학 때만 수업하고 6학기제인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일반대학원은 학기 중에 수업이 진행되고 계절제는 방학 때만 수업이 진행되어서 학교도 다른 학교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25. [대학원지원과]

- 동 민원 내용으로 보아 학기개시 이후 둘 이상의 학교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중학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학생 추가 선발 관련

질의

- 로스쿨 학생 추가 선발 관련 기준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2. 23.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제23조(학생선발),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및 동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 공표),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생 선발전에 입학전형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원 외 입학전형의 학생 선발 또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및 그 연합체로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선발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세부 시행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강의평가제 관련 지침 유무 질의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 강의평가제 관련 지침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30. [대학원지원과]

- 우선 교과부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강의평가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각 대학을 심사평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설치 인가하였고, 동 심사평가의 기준에는 “수업평가계획의 합리성 정도(강의평가시스템 강화 방안의 우수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소속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요청하시면 동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대학 졸업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입학자격 문의

질의

- 중국 대학 졸업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 입학자격 문의

회신

회신일 : 2009. 8. 5.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로스쿨대학 지정에 관한 재신청

질의

-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이후 추가로 로스쿨대학 지정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5. 13. [대학원지원과]

- 2009년 3월부터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상당기간 동안 양 제도를 통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 설치인가 및 총 입학정원의 증원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착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진설계 관련 문의**질의**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된 사항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적용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국 대도시 모든 학교에 내진설계기준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에 대학교 설립 시 이때도 적용하여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22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내진설계 기준 제1장 총칙 1.1(목적) 본 기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 의하여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대학교 실험실내 옥내저장소 부대시설 인정여부?**질의**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2.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 연구시설 :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질의)건축법에서는 부속용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라. 관계법령 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우 부속용도로 본다. 라고 합니다.
- 대학교 실험실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옥내저장소 허가 시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의 연구시설에서 규정하는 그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1. 2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서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사 중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교 실험실 내 옥내저장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2항에 따른 부속 건축물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그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장소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서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주된 용도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 교육 및 연구시설 내 음식점 허가여부

질의

- 교육 및 연구시설(대학) 주용도의 건축물의 대학교내에서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대시설(편의시설)로 생과일 주스 및 원두커피를 판매를 위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3.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들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것.
- 그러나, 영업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신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시설 관련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중 대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같은 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학교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운동시설, 음식점, 강의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는데 학교시설 내용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장(사단법인)이 관련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1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7항에 따르면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위 근거로 볼 때 시행자가 설립주체이고 그 교지 안에 건축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학생들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라면 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학교장(사단법인)이 임대여부는 소유권이 설립주체에 있거나 설립주체가 인정한 일부 건축물만 교지 안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대여부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 내 골프실습실 설치 가능여부?

질의

- 대학교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6.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별표 제2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교육지원시설의 범주에 “체육관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은 체육수업에 필요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 내 음식점 가능 여부

질의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음식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대학설립·운영규정상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할 경우 관련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2. [교육시설담당관]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기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기업 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즉, 음식점 영업이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등의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며, 절차상으로도 관련법에 의해(부가가치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를 필 하여야 합니다.
-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촉법상 학교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기업은 교지 내 또는 기존 대학시설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대학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입주가능 여건

질의

- 최근 들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학생의 부족, 편입학 등에 의한 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의 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기존부지의 활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의 국립대학

중 일부는 학교이전에 의해 기존 건물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의 시설의 활용 대안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대학의 건물에

- (1) 민간 기업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산학협력이나 학교기업 등의 형태가 아닌 대형유통업체 (○마트, ○○마트 등)의 판매업도 가능한지요?
- (2) 민간 기업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학원 등)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3)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나 정책 자료가 존재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나 정책 자료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http://www.prism.go.kr>)”을 통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과정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입학 시 개선할 내용

질의

- 신 입학은 고졸이상 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요구되고 있으며 학사편입학은 대학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시간제 입학서류입니다. 시간제를 통해서 신입학대상은 물론 고졸이상의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사본이 필수 서류이겠으나 시간제 입학대상자 중에는 일부학점이 수를 위한 학사 이상의 신청자도 있습니다.
- 그런데 ○○○대학에서 시간제 입학 대상자 중에 신입학자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일부학점 이수를 위해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대상자 모두에게 고졸증명서와 고졸생활기록부 사본을 기본 서류로 받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고졸증명서, 고등 생활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5.(2010.11.12.) [이러닝지원과]

- 시간제등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3조1항 및 제36조를 보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는 ‘대학의 장은 시간제 등록 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에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010.9.1.개정)
- 따라서 필수전형자료 고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졸업학교의 성적, 고졸학력검정고시 성적 중 어떤 자료를 전형자료로 활용할지는 학교자율결정 사항으로 교과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이상의 학력자는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대학교 공인인증서 사용

질의

- ○ ○ ○ 대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중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은행 업무와 같이 금전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4,4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인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개인 정보 유출이나 대리 출석 등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굳이 범용공인인증서를 써야하는 이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8. [이러닝지원과]

〈제도도입 취지〉

- 교과부에서는 지난 2008년 원격대학 설비기준(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2008-93, 2008.4.22)을 마련하여 재학생 신분확인 및 부정시험 방지 등을 위하여 각 사이버대학에 “신분인식 및 인증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바 있습니다.(예: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인증 등)
- 그 이유는 기존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가 ID/PW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 신분확인이나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 공인인증서는 이러한 시스템 중의 하나일 뿐이며 교과부에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강제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이를 도입·활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증권용을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유〉

- 현행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과 범용공인인증서로 크게 구분됩니다.
 1.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은행/보험/신용카드용과 정부 민원업무에 무료로 사용하며
 - * 정부민원업무 : 민원사무처리처리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민원 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
 2. 범용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인터넷쇼핑, 전자상거래, 전자공증 및 내용 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연간 4,400원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용도제한용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은행/보험/신용카드용과 정부민원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의 업무에는 활용할 수 가 없습니다.

- 사이버대학의 학사업무에 무료인 용도제한용을 쓰지 못하고 유료인 범용을 쓰는 이유는 학사업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전자인증서 관계법령인 전자서명법 제23조제4항 및 제32조3호에 의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 재학시절에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급을 취득했지만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자격증 1급을 취득하다보니 좀 더 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폭넓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1. 11.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공포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자격증 발급 업무도 “교육부장관(現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은 졸업한 전적대학에서 전환발급이 가능하며, 제반서류(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 원본 및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를 갖추어 신청바랍니다. 참고로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대학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前사회교육전문요원)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관리, 네트워크 및 지원, 교수 학습, 학습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기관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일부 노인복지,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 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

질의

- 2010년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기관이 학교장이 아닌 교과부장관명으로 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될 계획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6. 9. [평생 학습정책과]

- 대학(정규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의 목록(2010.5. 기준)과 현재까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의 목록을 평생교육정보망(<http://lll.or.kr>) 우측하단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 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기관은 대학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지정양성기관(2010.8월 종료),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일정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향후, 발급기관 일원화는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비용 및 효과 등의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 문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7. 30.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동의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백석문화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제주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지정기간 2008.9.1~2010.8.31)
- 참고로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은 2010년 8월 30일까지 운영된 뒤, 종료예정입니다.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의 운영 취지는 2000년에 만들어진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사 제도에 기존의 경력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즉,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 8월 30일 이후에는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을 재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유예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추가 지정은 없을 예정이고 이 기간 중에 수료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시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문의**질의**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과목이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2010. 2. 4.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는 크게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인 양성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급수는 2급과 3급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교육과정 이수(시간제등록 포함) 또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30학점(필수 5/선택 5, 각 3학점) 이수 시 2급 자격증, 21학점(필수 5/선택 2, 각 3학점) 이수 시 3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때,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수강신청 후 과목을 이수하여 반드시 3학점으로 취득하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 양성기관의 목록, 평생교육실습 등에 대한 자료는 평생교육정보망 (<http://lll.or.kr>) 우측하단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취득 관련 문의

질의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 중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 박사학위 취득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가정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고교에서 4년간 교사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회신

2010.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현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2007년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로 평생교육 관련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이 때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박사학위 취득 시 이수한 전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타 자격증이나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평생교육 관련전공이란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국제평생교육에 해당되며 이들 학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 계통의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질문

질의

- 평생교육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육대학원 진학, 평생교육원 이수, 사이버대학에서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이버 대학에서 한 학기당 12학점 이수가 가능하지만 타 대학과 함께 이수하면 즉, 2~3개의 다른 사이버대학을 이용하여 연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 (6개월)에 30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까?
- 여러 사이버대학들 중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취득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평생교육사2급을 취득하려면 전공필수와 선택을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이수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1. 19.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원) 내 개설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시간제등록 포함)과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은 여러 양성기관에서 나누어 이수도 가능하며, 시간제등록은 한 기관에서 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학점은행제 학점등록 시 한 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각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양성과정 개설 여부 및 운영 시기 등은 각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전공과는 무관하며,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관련 과목 30학점 취득 시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자격요건 등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자료는 평생교육정보망(<http://lll.or.kr>) 우측하단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 외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문의

질의

- 평생교육사란 자격증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편입하거나 사이버대학교 편입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것 말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편입 말고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2. 8.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과목 이수 방법은 대학의 편입학 이외에도 시간제등



록 방법,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수의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원격 교육 형태의 학점은행기관에서도 일부 관련과목을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 온라인 형태의 수업을 통해 이수가 가능합니다.

● 관련과목 일부 이수한 졸업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질의

- 저는 현재 교육학과를 졸업할 예정이지만 복수전공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과목 중에 평생교육론 등의 수업과목이 있는데 졸업한 후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10. 4. 13.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재학 당시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경우에도, 졸업 이후 부족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대학 내 개설된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신규입학, 편입학, 시간제등록 등)과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의 2급 승급 방법 문의

질의

- 전문대를 졸업하여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로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합니다.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과정을 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09년도에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였는데 이 경우
 1. 개정법에 따라 관련과목 10과목 3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 3급을 취득할 때 이수한 과목을 일부 인정받아서 구법 대상자로 나머지 과목만 수강하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9. 4. [평생 학습정책과]

- 이미 취득하신 3급자격증에 관한 요건(전문대에서 10과목 이수)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급을 편입한 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편입한 대학에서 10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실습 가능기관

질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을 할 경우 실습 가능한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1. 5. [평생 학습정책과]

- 실습 가능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도시 혹은 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내 평생교육 담당부서,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내 평생교육 담당부서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의 유형분류체계, 지역교육청에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의 목록,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목록 등 평생교육 실습가능기관에 대한 자료는 평생교육정보망(<http://lll.or.kr>) 우측하단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의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대체인정

질의

- 저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평생교육 관련 필수 과목 및 선택과목을 12개(과목명 유사 포함)도 이수하였습니다. 실습의 경우, 보육원인 ○○애육원에서 실시하였는데, 평생교육실습을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4. 22. [평생 학습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실습면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구) 평생교육법 적용대상자인지, 혹은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08년 이전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30학점(필수 7과목/선택 8과목, 각 2학점) 이상 이수할 시 2급 자격증, 20학점(필수 7과목/선택 3과목, 각 2학점) 이상 이수할 시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구법 적용 대상자라면, 3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하며,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경력을 증빙할 경우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 실습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와, 평생교육 업무 직접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2009년 이후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 30학점(필수 5과목/선택 5과목, 각 3학점) 이상 이수할 시, 2급 자격증, 21학점(필수 5과목/선택 2과목, 각 3학점) 이상 이수할 시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실습면제가 불가하며, 반드시 필수과목 중 하나인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3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단, 사회복지사 혹은 보육교사 등 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실습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면제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질의

- 2009년 이전에 한과목이라도 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실습이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평생교육사 과목 중 사회학개론을 1997년에 이수하여 3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실습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4. 26. [평생학습정책과]

- 귀하께서 1997년에 사회학개론을 이수하셨다고 하신 점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경력을 증빙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귀하께서 이수하신 과목(사회학개론)은 2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구법에 따른 나머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평생교육실습 면제 가능여부 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교에서 시간제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수 진입 사전에 학교측에 문의하여, 실습면제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아 30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실습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습을 하지 않고 학점을 이수하였는데 자격증을 신청하였더니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실습이 면제되거나 시간제로 이수 시 실습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습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시간제 수강을 할 시 실습면제조건이 달라지는 지 궁금하고 실습을 할시 2009년 규정으로 120시간을 하여야 하는지 2010년 기준으로 132시간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시간제로 학점 취득 전에 근무하는 경력과 학점 취득 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0. 3. 25. [평생 학습정책과]

- 실습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는 우선, 구)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로, 2008년도 이전 대학(원)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4년제 대학 졸업 여부 또는 시간제등록 수강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실습시간 역시, 단순히 2009년 규정과 2010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진입 시기(적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법 대상자 : 3주(120시간=8시간(1일)×5일(1주근무일수)×3주)
 - 개정법 대상자 : 4주(160시간=8시간(1일)×5일(1주근무일수)×4주) 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에 따른 평생교육실습 면제조건 문의



질의

- 2007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실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상담사로 시간제 근무자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습면제조건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더니 시간제 근무자라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평생교육관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한다하여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회신

2010. 3. 25. [평생 학습정책과]

- 구법적용자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력자란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되, 평생교육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주 5일 3개월 이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무의 형태로써 실습면제가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문의

질의

- 졸업한 이후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편입을 해서 이전 학교에서 못 들은 과목을 편입한 학교에서 추가로 다 이수하면, 교과목을 더 많이 이수한 학교에서 발급 받으면 되는 건지요? 이렇게 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되는 건지요?

회신

2009. 7. 15. [평생 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가능하며, 추후 타 대학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일부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2009년 이후 편입학을 했을 경우, 구법과 개정법 적용 선택이 가능하며, 개정법 적용 선택 시 그 학점은 인정해주되(2학점) 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는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 과목을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구법에 의한 필수과목인 '인간자원개발론'과 '원격교육활용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이 외의 개정법과 과목명이 동일한 필수과목을 이수했을 시에는 필수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법에 의해 이수한 선택과목은 개정법에 의한 선택과목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구법 적용 선택 혹은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2008년 이전에 편입한 한 경우,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구법 자격요건에 의해 구법 관련과목으로 이수 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과 편입한 대학 모두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침 상으로는 교과목을 많이 이수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가능한 현재 학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한 대학 측에 우선적으로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질의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편입한 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과목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편입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지금 현재 4학년 재학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편입한 학교의 졸업과 상관없이 바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0. 4. 6. [평생 학습정책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1항 3호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볼 때, 귀하께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여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이므로 “대학졸업 요건과 “관련과목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한(관련과목을 이수한) 대학에서 편입학 대학의 졸업과 상관없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질의

- 저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0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부로 저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문에 의하면 년 2회 교과부에 “평생교육 운영 현황 보고 할 때 사실과 다를 경우 동법 제42조(등록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고할 때 평생교육사 배치 유무도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평생교육사가 없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2. 8.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26조에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시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인한 후 공문 수리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을 학점은행제, 정부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에 응모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계속 미 배치 상태로 운영되면 교육과정의 폐쇄나 등록취소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통대 편입 학력자격 문의

질의

- ○○대학교 전자계산원을 1997년에 졸업하고 방통대 3학년 편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통대에 문의하였더니 1998년부터 시행된 학사학위를 인정받아야한다는 답변도 있고 다른 답변도 있습니다. 편입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하기위해 관련법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25. [이러닝지원과]

- 방통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고등교육법제51조(편입학)에 의거 전문대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 민원인께서 이수하신 ○○대 전자계산원 2년제 과정은 대학부설로 설치된 것으로써,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별도의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평가인정대상기관에 해당되므로 과정 이수 자체로써는 학력이나 학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방통대 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하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www.cb.or.kr>)에 문의하시어 평가인정 절차를 거쳐 전문대학 학력 및 학위를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독학사” 시험

질의

- “독학사” 시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시험 보는지요.

회신

2009. 9. 29.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단계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단계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제2단계 : 대학1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점은행 35학점 이상 취득자 1단계 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 제3단계 : 대학2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점은행 70학점 이상 취득자 2단계 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 제4단계 : 대학3년 이상 학력 인정자 또는 학점은행 105학점 이상 취득자 1~3단계 시험 전 과목 이상 합격(면제)자
- 단계별 인정시험과 합격기준 등 자세한 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및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학사 시험요일

질의

- 제조직에 다니는 20살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사회인인데요.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어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 유통관리사 산업기사 등 독학제는 모두 주말 시험이더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제조직분들이 계시는데 평일에도 보고 싶습니다.



회신 2010. 6. 24.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학위제는 다양한 응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성인으로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쉽도록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 및 토요일실시에 따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 대부분이 주중에는 각자 본연의 생활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기가 힘들며, 직장인의 경우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행 2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4시간제를 적용 받고 있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음.
 -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기타교육기관이 많아지고 이를 수강하는 응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독학사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질의

- 96년인가 97년경에 경영학 독학사를 취득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학위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10. 1. 21.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사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증명서 발급(전자결재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실 수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독학사는 매일 강의를 수강해야 되나요?

질의

- 저는 독학사로 법학을 할까 하는데, 독학사는 매일 강의를 수강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격증 공부하듯 혼자 공부하고 시험만 보는 건가요?

회신 2009. 10. 16.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학습한 정

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본인이 학점은행제 등의 방법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말씀하신 법학 전공분야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시험과목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독학사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질의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대목에 의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조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취득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대학원에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학사 시험 중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원인은 독학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바, 현재 갖고 있는 학사학위는 독학사 취득 희망 학위와는 다른 전공이고, 석박사과정은 독학사 취득 희망 학위와는 같은 전공입니다.
- 만약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된다면, 바로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해석상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2010. 6. 14. [평생 학습정책과]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3호에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나목 내지 마목’은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의하면 ‘나목부터 마목까지(법제처 홈페이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 법령 용어)’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해야 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학사 학위와 석·박사학위로 학위 분야가 다르므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오프라인 출석 문제

질의

- 올해 시간제로 사이버대학에 등록하게 된 주부입니다. 현대 올해부터 오프라인 출석 40%를 하지 않으면 F처리하겠다고 공지가 났습니다. 보통 시간제등록생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오프라인 출석이 어려워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오프라인 출석을 못할시 대체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조건 F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억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또한 학교 선택 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행업체를 통해 하다 보니 사는 곳과 아주 무관하게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에 과목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6과목 듣는데 전남 나주, 강진, 청주에 있는 3개 대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포항에 사는 제가 오프라인 점수 때문에 나주 강진까지 왕복 10시간 이상을 들여 가합니다.
- 오프라인 출석 점수는 거주지에 있는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출석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던지, 리포트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0. 3. 11.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36조에 의거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제는 별도의 반과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을 위해 개설한 강좌에 학칙으로 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학습자를 모집, 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일부 대학은 시설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여 부실한 강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하고 교육컨텐츠 및 교육 운영 전부를 위탁업체에 맡긴 결과, 대리수강,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그간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하여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질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로 인해 성실히 학습하여 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위의 질까지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 측에 시간제 수강 현황을 보고 받아 이 중 시간제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수업 시간 중의 일부는 출석 수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이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본 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차례 대학담당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본 기준이 무리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현실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임을 공지해 왔습니다.

- 본 기준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공문 시달과 구두 권고 등을 통해 사실상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본 기준으로 인해 그간 세워두었던 학습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본 기준이 엄격히 시행됨으로써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성실하게 학업을 하시는 학습자에게는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학업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끝으로 2010년 1학기 개설과목부터는 60% 이상 출석 수업을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반 시간제 등록제의 경우는 출석 수업이 40%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및 전문학사 학위취득

질의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및 전문대 졸업학위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수업을 신청, 수강 후 목표학점을 따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한국학사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본인은 현재 66세로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학점은행제 수업을 받을 경우 대학을 자퇴하여야 한데 언제까지 자퇴를 하여야 하는지요? 휴학을 해 놓고 학점은행제 수업을 받아 후일 3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2009. 7. 31.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전공 이수시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요건은 자격 발급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 02-786-08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 확인 요청하신 “한국학사교육개발원”은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과 수강생을 모집 연결해 주는 사설업체입니다.



- 학점인정기관 현황은 “학점은행(<http://www.cb.or.kr>)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학점인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실 수 있으나, 학사일정 등은 교육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위 취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적법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리부서가 어디 인가요

질의

-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회신

2009. 12. 18. [평생 학습정책과]

-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http://www.sac.ac.kr>)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 시간제등록 관련

질의

- 시간제 수업등록을 했는데 교과부 온라인수업 인가된 학교 맞나요? 100%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40% 오프 출석 안 해도 되는 거 맞는 건가요?

회신

2010. 3. 3. [평생 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 제36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점은행(<http://www.cb.or.kr>) 홈페이지 팝업창의 공지를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오프라인 출석 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제 등록)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교육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 ④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2008.9.8, 2010.9.1>
 -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 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⑧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9.8, 2010.9.1>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제 수업료징수에 관한 건

질의

- 시간제 모집 생을 업체에서 모집하고 한 과목당 일부금액만 학교에 입금해도 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연말정산시 시간제수업 수강료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회신

2009. 12. 22. [평생학습정책과]

- 시간제등록제를 포함하여 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업료 징수는 학교 설립·경영자에게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제반사항은 국세청 소관 업무이므로, 국세청에 질의하시면 좀 더 상세한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수납기관(대학)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에 관하여

질의

- 시간제 수업을 하는 각 대학에서 시간제 학사행정 및 교비회계가 동일 학교에 정시 입학하여 다니는 학생과 다른 편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편제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 시간제수업의 학사행정 및 교비회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시간제 수업이 수익사업입니까?

회신 2010. 2. 5. [평생 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시간제등록생은 대학 재학생과 별도의 학칙이 정한 전형 방법에 의거 학기별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재학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학생과 같이 운영하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으로 운영하는 별도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수업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되는 제도로 “총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위와 같이 시간제수업은 고등교육법상 운영되는 제도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간제등록생 제도에 대해 문의

질의

- 시간제등록제도가 학점은행제를 말하는 건지요? 2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제등록제도로 선발한 경우 학점은 학교에서 관리운영하게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나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련 기관에 취득학점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0. 27.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6가지의 학점원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시간제등록제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6가지 학점원 중의 하나로서 이수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을 달리합니다.
-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서 정규 입학생 외 성인학습자에게도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은 학점은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과목인 반면, 시간제등록의 경우, 일반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에게 개설하는 학습과목을 각 학교 학칙에 의하여 해당 학습과목의 수강이 필요한 성인학습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입니다.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학점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평가인정학습과목은 해당 기



관이 종강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을 일괄하여 보고하므로 학습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학점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강의장)에 대한 질의

질의

- 평생교육진흥원고시에 의하면, 내년부터 시간제등록생의 원격교육비율은 60%로 적용하고, off-line수업은 4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off-line수업은 반드시 대학캠퍼스내에서 수업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강의장을 이동하여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도 off-line으로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0. 22. [평생학습정책과]

- 시간제등록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실시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대학 재학생이 수강하는 “교육과정”을 시간제등록생이 수강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학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09.9.1부터는 출석수업 20% 이상, '10.3.1부터는 출석수업 40% 이상을 시간제등록생 수강 교과목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바,
 - 출석 수업은 재학생과 같이 또는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이라도 학교의 교사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증 인정에 대하여

질의

- 자산관리사(FP) 자격증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학점 자격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보는 FP시험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09.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그 중 대학(교)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을 학점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2005년 4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공인될 당시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을 지정하므로, 재공인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께서 취득하신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위관련

질의

- 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제가 시간제수업으로 143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아야하는데 전문학사학위를 신청, 전문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올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학교 문의를 하니까 대졸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143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되는 건 줄 알고 학위증명서를 출력하여 문의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 143학점이라는 학점이 전문학사로 신청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고 학습자의 잘 못이라고만 하는 건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신 2009. 1.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2007년 10월에 사회복지 전공 전문학사 학위로 학습자 등록하여, 2009년 8월 31일자에 사회복지 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09년 8월 12일자에 [전문학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셨고, 학위를 취득한 8월 31일자에는 [전문학사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발급받으셨습니다.
- 또한, 학점은행제 학위신청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위신청] 메뉴에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하는 내용(전문학사/학사, 전공 등)을 명확히 하여 신청하도록 여러 차례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본인이 전문학사로 등록하고, 학위 신청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위를 취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설사,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이미 학위를 수여하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학위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학위취소는 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장대해서만 학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위취득이전에 취득학점은 인정될 수 없다는 법에 관하여

질의

- 저는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로 모든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같은 학기에 시작했으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점인정을 받으려하니 학위취득 전에 받은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신

2010. 4. 27.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인정하여 학위 수여와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일정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학위가 수여됩니다.
- 하나의 학위가 수여된 상황에서 학위 취득에 인정된 학점을 가지고 다른 학위 취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 상황은 일반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임차시설활용에 대하여

질의

-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임차시설활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전공실기 과정 중에서 실용음악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임차시설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실용음악 학원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7. 16.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시설, 학습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하여

질의

- 국가공인 자격증 중 비서 1급, 비서 2급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도 1급의 경우 10점, 2급의 경우 4점의 자격학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경호비서학에 경우 전공자격이 아닌 일선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4년제 대학 경호비서학과내 비서학에 관한 전공 수업이 있으며, 학점은행제에 고시되어 있는 표준교육과정에도 비석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격인정이 아닌 일선자격인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학점은행제에서도 인정하는 국가공인 비서 자격을 경호비서학 전공자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0. 6. 23.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중에서 경호비서학 전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호비서학 전공은 경호비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전 무술 수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인격도야를 길러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인류의 평화와 사회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경호비서 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호비서학은 표준교육과정을 보면 전공필수 과목은 경호를 주로 하고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에 경호와 비서, 예절, 안전 등의 유기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공에 연계되는 자격은 경비지도사가 있고, 비서 자격증은 전공별 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공별 자격증의 연계는 전공에 필수적인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증명서 관련

질의

- 지금 3년제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모자라는 학점들은 채워나가고 8월에 학위취득예정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학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학위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 하지만 4월달에 학습자 등록을 통해서 학습자 등록이 된 사람만 이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4월 달에 학습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6월에 있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이 때 신청한다면 이미 대학원 원서 불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회신

2010. 5. 31. [평생학습정책과]

- 학습자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학으로 비유하자면, 입학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학습자가 이수한 학점들을 학적부에 누적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민원인께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하고 있는지, 어떠한 학위종류와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들(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등)을 이수하였는지 등 민원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등록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어떠한 학점들을 이수하였는지, 그 학점들은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학점들(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등)을 이수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절차

학점은행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무형문화재 등을 활용한 학습 결과를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학습자가 이수한 각각의 학습과목에 대한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 등 학습구분에 대한 결정은 분

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게 됨으로 학점인정과 학위수여 등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지만, 학점은행제는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각기 다른 다양한 학습결과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관련 민원처리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의해 60일이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www.egov.go.kr> 참조).

이와 같이, 민원인이 이수한 학점의 성격(전공필수 등)이 어떻게 판정될 수 있는가 등의 판정절차를 거쳐야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신청 시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학위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년 전기학위는 12월 15일-1월 15일, 후기 학위는 6월 15일-7월 15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등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 브로슈어, 리플레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자료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이번 2010년 후기 학위신청기간(6월 15일-7월15일)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필요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의 처리는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질의

- 전문대 졸업 후 편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부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시 학위수여를 교과부 장관명의로 하는 대학도 있고 총장 명의로 하는 대학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 그리고, 총장 명의로 학위 수여를 발급한다면 그것은 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 수료증의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7. 1.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 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학사학위 : 84학점 이상
 2. 전문학사학위 : 48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65학점) 이상
 3. 타전공 학습자의 경우도 가능해짐
 - 학사학위 : 48학점이상
 - 전문학사학위 : 36학점(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42학점) 이상
- 다만,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라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 지침 (2002. 5,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라 학위증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위번호 또한 정규과정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였을 시 이를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유학가능여부

질의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싱가포르나 미국 기타국가의 대학원 입학 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7. 16.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다만, 해외대학에서의 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이 정한 규정 등에 의한 것이므로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대학에서의 학점은행제 학위인정 가능여부는 교과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확대요청

질의

- 제가 4년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신학전공으로 교육기관을 알아보니 거의 서울, 경기지방에 밀집해 있고 또 전공이 특이하да보니 학습자가 별로 없어 전공과목이 개설된 데가 몇 군데 없고 있더라도 정원미달로 폐강된 곳이 많습니다.
- 설사 개설된 교육원이 있더라도 서울, 경기지역이라 저처럼 지방에 사는 가정이 있는 만학도들에게는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경영학이나 영문학 등 전공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점을 이수하던데 신학전공은 찾는 학습자가 없어서 전부 오프라인 수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회신 2010. 4. 16. [평생 학습정책과]

-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사회(평생)교육원,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 대학 및 전문대학 수준의 각종학교,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들 기관 중에서 교수 및 강사, 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등의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학점은행제의 학습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교재 및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납



입증 사본과 함께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 학점인정 취소시 나머지 학점의 인정

질의

- 대학 졸업 후 일부 학점 취득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견된다면 학점 인정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점인정이 취소되면 당연히 학위수여도 취소되겠지요.
- 궁금한 것은 일부 학점 취득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해당 학점이 취소, 결국 학위수여까지 취소된 경우 취소된 학점 이외에 정상적으로 취득한 다른 학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학점인정이 된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다시 학위를 받거나 혹은 국가고시, 자격증 등에 요구되는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8. 31.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 할 수 있는바, 대학교에서 정한 학칙 및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학점과 학위 취소 및 학점인정 등은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대학교 학사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학점은행제도로의 학위취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방송영상예술원 관련

질의

- 한국방송영상예술원이 교과부에 인가된 교육기관인지요? 어떤 성격의 기관이며 어떤 법률

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인지요?

- 한국방송영상예술원을 2년 마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 하는지요? 또는 4년을 마치면 일반대학교 4년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지요? 또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9. 8. [평생 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또한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률상 학자금지원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자금 대출 이용은 어려우며, 수업 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군입대 연기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대해

질의

-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관련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대학학력인정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회신 2009. 12. 1. [평생 학습정책과]

- 문의하신 기관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학점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취득을 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휴학 중 고등교육법 적용 사이버대학 진학건

질의

- 저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금년 7월에 제대하였습니다. 제대 후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4년제 사이버대학에 진학하여 2년 공부한 후 입대 전에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려고 합니다. 정규 대학 휴학 중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0. 19. [평생 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이중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이버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하므로 진학대학이 어떤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

질의

-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사이버 대학엘 편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과에 인원이 300명이 가까이 되는데 지도교수가 1명뿐이었습니다.
- 사이버대학이긴하지만 온라인으로 300명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고 200명 기준하여 소수점 반올림이면 300명의 경우 2명의 교수를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7. [이러닝지원과]

-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모두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임교원 : 고등교육법 14조 제2항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의미)

1. 사이버대학 전임교원 확보 기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학과 또는 학부 등에 두는 전공별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교원 수는 학생 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는 올림)만큼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확보해야 하고,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전체 전임교원 수의 1/5이내에서 전임교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수는 당해 연도 4.1자 기준으로 “편제정원” 과 “정원 내 등록생 + 정원 외 등록생 + 시간제 등록생/3”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으로 함

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전임교원 확보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

학과(학부) 학생 수 200명당 1명(나머지가 20명 초과 시 1명 추가확보)이며, 이 경우 학생 수는 당해 연도 4.1자 기준으로 “정원 내 학생 수 + 정원 외 학생 수 + 시간제 등록생/3”으로 함

사이버 대학교 2.5학기 편입학 제도

질의

- 작년 까지만 해도 사이버 대학교의 2.5학기(3학기 편입)가 가능했었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정도 정규 대학을 다니다가 53학점 이상 채운 학생의 경우 편입이 가능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2009년 10월쯤에 한 사이버 대학에 2010년 2.5학년 편입학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6. [이러닝지원과]

-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 편입학만 실시하며 2학년 편입학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대학(4년제)의 경우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학년 및 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편입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과부 사이버대학 학사편람('08.9.8)에 따르면, 3~5학기를 편입학 시기로 정하고 있고 편입학 학년과 학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각 사이버 대에서는 2-1학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2-1학기 편입생과 학생의 형편에 맞게 2-2학기 편입생을 모두 선발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이버대학이 수업연한 4년, 학년도 3.1부터 다음해 2.28, 매 학년도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상의 학기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수업연한 :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
- 따라서 우리 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편입학제도 개선 차원에서 2.5학년제를 폐



지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이버 대학교설립 절차문의

질의

- 사이버대학교(원격)를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6. [이러닝지원과]

- 사이버 대학 설립 관련하여서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법령을 보면 설립인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 홈페이지 왼쪽 실국마당 -> 평생직업교육국 -> 정보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사이버대학 설립요령 공지도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대학에 오프라인교육 이유

질의

- 오늘 사이버대학강의를 들으려고 하니 공지사항으로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갑자기 오프라인 교육을 20% 반영한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이러닝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원격수업 중 20% 이내로 하여 출석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에 의하면 원격대학의 출석 수업은 20% 범위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교과부에서 강제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려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원격수업 시 출석 수업을 20%이상 확보하도록 한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09-6호(2009.3.10)에 의거
 1.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 (2010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하고 그 이후는 40% <부칙 제2조>)와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2010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하고 그 이후는 60% <부칙 제2조>)에 해당됩니다.
- 이는 일반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원격수업 시 위 고시에 의거 지난 3.10 이후 홈페이지 공지, 대학 공문시행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원격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조치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관련법령 *

-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등)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 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 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6호(2009.3.10) 제6조(수업방법)
 -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원격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60% 이상
 - 나. 원격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
 - 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일수의 60% 이내.

부칙(2009.3.10) 제2조(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28일까지 80%를, 2010년 8월 31일까지 60%를 적용한다.
- ② 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를 적용한다.



사이버대학 복수전공 신청조건

질의

- 사이버대학의 복수전공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사이버대학 운영규정 등 관계법령을 살펴보았는데 복수전공의 성적제한(3.0/4.5)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조건은 예를 들어 몇 학점 이상 신청 가능 혹은 몇 학기 등록 이상 신청 이러한 신청자격조건은 학교에서 정하는 데로 시행하는지요? 혹시 법이나령 등으로 복수전공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그리고 2009년 7월 20일 전과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시행령29조3항에 의거 2학년~3학년에서 전과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5항에는 “원격대학은 학칙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 [이러닝지원과]

- 전공은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복수전공은 하나의 학위증에 두 개의 전공을 병기하는 것입니다. 복수전공 신청조건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교과부 사이버대학 편람에 따르면,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누적 평점평균 B°(4.3만점 기준 B-)이상으로 하되, 전공이수 및 인정심사에 관하여는 학칙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전과는 2~3학년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 4년제에 해당되며, 사이버대학은 전과 시기, 대상, 요건 등 학칙으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기준에 설비현황

질의

- 사이버대학설립 기준 한글 문서에 보니 서버 설비 기준이 CPU 7,500tcmC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기준이 머고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인수 없습니다. 쉽게 인텔 쿼드코어 제온

3.0Gh 이런 식으로 표기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사양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8. [이러닝지원과]

- CPU의 용량단위 tcmC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비기준에서 CPU의 용량단위를 tpmC와 OPS를 사용합니다.
- 통상 CPU의 성능을 표기하기 위하여 MIPS가 사용되어 왔으며 1초에 100만 개 단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MIPS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컴퓨터의 기계어 명령들의 수행 속도가 명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기종에 따라 하나의 명령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서버의 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세계적 공인기관의 벤치마크 지표인 tpmC와 OPS를 용량지표로 사용합니다.
- tpmC는 트랜잭션 처리 성능 평의회(TPC)에서 제정하여 발표하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OLTP)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표준 규격의 C모델을 의미하며 OPS는 SPEC(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Cooperative)가 정한 JAVA Business Benchmark로 Java 플랫폼의 실제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2008년 현재 JBB2000은 JBB2005로 변경되었으므로 최근 출시된 서버의 경우엔 JBB2005로 수치가 표시되지만 함께 혼용 가능합니다. (JBB2000 과 JBB2005는 벤치마크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두 수치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단지 시스템의 성능과 규모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혼용은 가능합니다)
- * 서버의 tpmC, 또는 OPS를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부분의 메이저급 서버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에 대해 벤치마킹 시험을 하므로 서버를 공급한 제조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tpmC 는 되어 있으나 OPS는 안되어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pmC와 OPS의 수치 환산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tpmC와 OPS는 서로 개념이 다른 벤치마크 지표입니다. tpmC 수치와 OPS 수치를 서로 환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시스템이 완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성능지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문서에는 성능지표 산출에 필요한 사항과 시스템의 구성방법, 벤치마킹 프로그램 소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www.tpc.org/tpcc/spec/tpcc_current.pdf
- <http://www.spec.org/jbb2005/>* 만일, 서버를 공급한 제조사가 성능지표를 제공하지 않고 자체적인 성능시험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시험된 시스템을 참조하여 대강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성능지표를 제공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서버 제조사들은 자체적인 CPU 제조 능력이 없으므로 대부분 Itanium 이나 Xeon 같은 Intel의 프로세서를



CPU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서버의 제조사와 관계없이 CPU의 종류와 속도, 프로세서의 수, 코어의 수에 따라 거의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므로 전환신청 시에 제출하는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명세서에는 서버의 규격, 모델명과 함께 CPU의 구성(예: Xeon, Dual Core, 1.6GHz, 4 Processor)을 표기하고 참조모델명과 해당 tpmC, 또는 OPS를 기재 하면 됩니다.

사이버대 졸업 후 일반대학원진학 가능한지

질의

- 사이버대학교의 학사인정이 일반대학교와 같이 같나요? 그럼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 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 [이러닝지원과]

- 교과부에서 인가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해당 원격대학을 졸업 시 일반 4년제 대학과 동등하게 학력이 인정되며, 졸업장은 해당 대학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입학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현황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마당 -> 2009학년도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사이버대 위탁생 퇴사지 학적처리

질의

- 현재 산업체 위탁생으로 사이버대 재학 중인데 퇴사 시 제적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이러닝지원과]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 따르면 산업체 위탁생의 퇴사지 제적기준은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하여야 하고,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군대에서 사이버대 수업 들을 수 있는지

질의

- 군대에서도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수업 듣고 졸업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이러닝지원과]

- 현행 병역법상 군 입대를 하려면 학교를 휴학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원격수업 수강 시에는 학점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10.5.)에도 군복무 중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로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생은 군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하므로 학점취득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학에 등록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개정 전 현행 병역법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 사이버대학에서 실습비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사이버대학 실험실습비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1. 사이버대학은 원격교육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과개설 등에도



실습이 가미된 학과는 제약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실험실습비 징수에 제약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실험실습비 징수가 가능한지요?

2. 실험실습비 부과가 가능하다면 실험실습비는 수업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록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는 통합고지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실험실습비는 선택납부 경비가 아닌 수업료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선택경비에 포함되어 학생 자원에 맡겨 징수하여야 하는 항목인지요?
3.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학교 학칙에 두고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13. [이러닝지원과]

- 사이버대학에서 실험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으려면, 우선 실험실습학과를 설치해야 하는데
- 교과부 사이버대학 학사편람에 의하면, 실험실습학과는 출석 및 실기수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대학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이버대학에는 이러한 학과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험실습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만일 이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학자금정책팀-282(2007.1.12)에 의거 필수적으로 통합 고지해야 하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 아니고 그 외의 기타 납부금에 해당되므로 별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 현재 사이버대학 중 예체능계열의 일부 학과에서 실험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강료 형식으로 별도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학칙으로 명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관련법령〉

* 사이버대학 학사편람('10.5, P3) 마. 설치의 제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 및 사범계열 등 국가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학과(전공)와 실험실습을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과 등 원격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과(전공)는 설치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학자금정책팀-282(2007.1.12) 등록금 납입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통합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학칙)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등록 및 수강신청, 13.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대학원대학도 설립 가능한지

질의

-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의하면 대학원만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이버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등교육법 외에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0796호) 제3조(특수대학원)에 보면 사이버대학의 장은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즉,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이 설립된 후에만이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학원만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원대학은 현재 규정상 설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7. 29. [이러닝지원과]

- 알고계신 것처럼 고등교육법 상에는 대학원대학에 대한 설립규정이 나와 있지만 사이버대학의 설립 시 설립근거법령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학원만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원대학 설립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 교육실습을 면제받기 위해 처리해야 할 순서는?

질의

- 본인은 음악(정교사)2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등특수교육과에 편입하여 금년5월에 교육실습이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교육부 2008년 지시에 의하면 이미 정교사2급 이상을 소지한 자는 자격 종별에 상관없이 다른 교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는 교육실습을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교육실습을 면제받기 위해 처리해야 할 순서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회신

2010-02-09 [교직발전기획과]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 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이며, 대학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생실습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 저는 현재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번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 합격하여 초등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를 하면서 교대원을 졸업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 후 교원 임용고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대원을 졸업하려면 교육실습을 나가 학교에서 4주간 실습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계약직이나 9월부터 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교육실습을 가려고 하면 근무하는 학교를 사직하고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민원을 신청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09년 9월부터 학습부진아 담당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6개월 간 근무하고 내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시작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영어시수에 대한 실제 교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교생실습에 준하는 교육경력이라 생각 되는데요 이 경력으로 교생실습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학습부진아 인턴교사로 약 120만원의 기본적인 급여만으로 학교에서 종일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진학생 지도는 방과 후에 이루어질 듯합니다만 이를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



아서 교대원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2009. 9. 3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해 교사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교직 과목(교육실습 포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습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인정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어전임강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해당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이에 교과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설명 드리오며, 교육실습의 면제여부와는 별개임을 설명 드립니다.
- 또한, 교생실습에 준하는 교육경력으로 교생실습 면제를 받는지의 여부는 해당 대학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또한 교과부에서 별도로 정한 지침은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이 있는데도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질의

- 저는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여, 중등교원(전산'컴퓨터')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하여 상담심리전공을 하였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 입학하였습니다. 교원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육실습 및 교직이론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고,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만 이수하고, 논문이 통과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막상 합격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려는데 교직소양으로 분류된 과목은 물론이고, 학부 때 듣지 않았던 교직이론 과목들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실습과 교육관련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직교원의 경우는 교직이수를 안 해도 되는 것 같더군요. 저는 현직교원은 아니지만, 교원자격증은 있는데도 교직을 또 이수해야하고, 교육실습을 또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목의 면제는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가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

시 이수) 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판단하며, 교직과목 이수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 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 학점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사범대학에서 일반 교직(치료교육)을 이수하던 4학년 여학생입니다.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치료교육이 사라지고 저희 학과는 모두 특수교육관련 학과로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교직과목 중에서 교과교육영역을 하나 못 듣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살펴보니, 2009년부터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에 관련하여 교과교육영역 4학점을 제외해도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년도에 졸업을 하지 못해 9학기 까지 다니게 되는데, 그럼 교과교육영역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 한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신

2010. 1. 22 [교직발전기획과]

- 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직과정 이수 학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예정 지원가능 학년 문의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자 중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짜인 3월 3일 휴학(등록금 미납)을 접수한 학생의 경우, 2학년으로 간주하여 지원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11.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과정 이수 예정자는 2학년 종료 시까지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합니다. 민원상의 대상은 3학년에 해당되어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합니다.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생실습

질의

- 주전공이 산림학전공이라 식물자원/조경 교사자격증이 나오고, 복수전공은 생물교육과라 생물 교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내년 아니면 내 후년 1학기 때 교생실습을 갈 예정입니다. 원래 교원자격편람에 의하면 주전공으로 교생실습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복수전공으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주전공이 아닌 복수전공 표시 과목명으로 교생실습을 갈 수 있나요?

회신 2010. 6. 22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하며, 교과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이수 자격증을 받고 교생실습을 나가야하는 건가요?

질의

- ○○대학교 수학교육과에 학사 편입한 학생입니다. 학교 학사정보에 편입 시 교직이수 자격증을 이수한 자는 교생실습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그 점 고려해서 시간표를 신청했는데요, 갑자기 교원자격실무편람에서 변경되었다며 어쩔 수 없

다고 하네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한 학기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 쪽에서는 교과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0. 4. 7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교사자격증 취득여부를 알 수 없으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 사항이며, 대학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

- 유치원정교사2급 관련 자격기준 내용 중에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있는데 타과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이 아니더라도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하면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교직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나요?

회신 2009. 11. 20 [교직발전기획과]

-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 취득 조건 중 학점취득은 반드시 졸업 전에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하며, 보육과 교직학점만으로 유치원교사자격취득은 어려울 것입니다. 동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직과정승인을 받은 대학을 확인한 후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여야 할 것이며, 교과부 홈페이지 > 공개자료실 > 교원양성기관 편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취득 후 우대사항(교원 무시험검정)

질의

- 기술사 취득 후 우대사항으로 교원 무시험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정 9조 3항에 의하면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



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당해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999.1.29, 2004.9.3, 2006.4.12>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 중 교원자격 중 실기교사자격의 무시험검정시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4조에 의한 별표 5 직무분야별 종목을 의미하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운계 관련 표시과목을 의미합니다. 해당 국가자격증과 전공 및 교직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대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수업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지

질의

- 사범대를 졸업하여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던 중에 특수교육에 꿈을 가지고 특수교육(초등)에 편입이 아닌 신입학 하였습니다. 교직수업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지요? 혹은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요?

회신

2010. 3. 15 [교직발전기획과]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하야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중 학칙에 따라 대학의 졸업요건에 포함되는 과목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이며, 대학에서 면제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양성기관별로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직과목 면제 여부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에서 독학사를 인정여부?

질의

- 저는 지금 영어교과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영문학과 독학사를 취득한 후에 영어교육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여러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대학원은 아직 대답을 못 들었지만) ○○대대학원(일반대학원) 영어교육과에서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격증 취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분명히 2007년 법령을 개정할 때 대학에서 취득한 학사나 독학사/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사자격 취득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법령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모든 대학에서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를 인정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회신

2009. 8.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대학원에서의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에서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교사자격증취득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학원의 입학과에 다시 한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학사 학위로 교육대학원에 입학가능한가요?

질의

1.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면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가요?
2. 독학사(학점은행)로 학점을 취득한 전공 학점에 대해서 교육대학원에서 인정을 받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교사자격증(2급) 대상자에 독학사는 제외되지는 않습니까?

회신

2009. 11. 9 [교직발전기획과]

답변1) 고등교육법 33조에 의한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입학자격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및 학위가 있는 자로 기술되어 있으며, 독학사의 경우 동등학력으로 인정되므로



교육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답변2) 교육대학원 입학 시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이 되으며, 교육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과를 졸업 후 대학원을 특수교육과로 진학가능한가요?

질의

- 물리치료과 3년 재학 후에 학점은행제로 학사졸업을 하고 대학원으로 특수교육과를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원을 특수교육과로 이수하게 되면 특수학교 등의 임용고사를 볼 자격이 주어지나요? 물론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신

2010. 3.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 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원격대학 등에서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직과목 취득은 불가하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에 자격기준 및 취득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치료사 교원자격증 가능한가요?

질의

- 저는 현재 미술전공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술치료사 자격증

을 알아보던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미술치료자격증을 바탕으로 방과 후 교사를 지원하려 합니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요. 미술치료사 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수백 군데입니다. 사단법인 협회만 수십 군데이고 각 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이 있고요. 비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은 곳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기관하의 자격증을 따야하는지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곳이 없다면 어느 곳을 선택 하는 게 가장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자격증 관련 된 것을 제가 알아서 선택해야 하는 건지요.

회신 2009. 11. 2 [교직발전기획과]

- 미술치료사의 교원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자격기준의 종별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에 한한 표시과목만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미술치료과정은 교과목 표시과목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 다만, 민간자격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교원자격증이 아닌 일반 자격으로 교원자격증과는 별개임을 설명 드립니다.

☉ 보건교사가 되는 방법

질의

- 간호학과를 편입하여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보건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직이수를 하면 자격이 주어나요? 저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보건교사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 2009. 7. 21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직+전공 및 관련 국가자격 취득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이수 후 무시험검정을 통해 가능하나 2009학년도부터는 교직 및 전공학점이 24+50학점 이상으로 이수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반드시 입학처에 상담을 통하여 자격이수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으로 비교과인 보건교사로의 자격취득은 안타깝지만 가능하지 않으나, 교직이수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호교사 자격이 보건교사 자격으로 변경하는가요?

질의

- 95년도 3년제 간호대학교 다니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간호사면허증과 양호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양호교사 자격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보건교사로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0. 2. 9 [교직발전기획과]

- 양호교사 자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보건교사로의 자격증 재교부는 선생님께서 보건교사로 임용되고 보건교사 1급으로 자격이 변동될 때 재교부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양호교사 자격증은 보건교사 자격증과 동일하므로 교원임용고사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하시는 사업의 큰 성취와 맥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 보육교사 2급으로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의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그룹 홈에서 복지사로 있었습니다. 현재 2010 유치원에서 3월 1일부터 보조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준교사로서 2년의 실제 경력이 있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준교사 자격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준교사가 되면 해당 교육청에 준교사로서 임용보고도 필요한 것인가요?

회신

2010. 3. 15 [교직발전기획과]

- 유치원 준교사자격검정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수급에 의해 자격검정

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유치원교사자격증의 수급이 많은 관계로 유치원 준교사 자격 검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기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질의

- 실기교사 자격(부기 실기교사)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자격 취득하였으며, 현재 사이버대에 등록하여 경영학과 교육중인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검정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9. 4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 자격취득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규정된 교사의 종류의 하나로서 농업, 공업, 상업, 해운, 예능, 가정, 체육 및 기타 전문교과의 각 학과별 실기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실기교사자격 취득방법으로는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서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예능, 체육의 기능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며 자격검정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검정 대상
 - 전문대학 졸업자
 - 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전공, 학과)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교육부고시 제2000-1 2000. 1.28 참조)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 동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졸업자
 - 대학졸업자 : 예능, 체육의 기능 이수자
 - 자격검정의 요건
 - 실기교사 기능 습득
 - 기본이수영역 6학점 이상 이수
 -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 이수



- 국가기술자격 소지 : 실기교사 중 실업계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졸업이전에 취득).
- ※ 실업계 과목 :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 ※ 표시과목별 국가기술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기술분야별 등급 및 종목 참조
- 자격증 발급
- 전문대학, 대학 : 학교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시·도교육감이 발급 임용의 경우 실업계고교 등 관련교과의 전문실기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채용계획에 의해 실기교사를 채용합니다.
- 참고로 국가 주도적으로 실기교사를 임용하는 제도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수요기관인 학교나 관할시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개전형인 임용고시의 경우 해당 과목의 필요에 따라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실기교과목의 경우 중등정교사의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는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전공자의 교원자격증취득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교직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과학(화학)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기간제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학교사가 되고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에 문의를 하면 각 대학마다 입학기준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은 부전공이지만 학점을 인정받으면 충분히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대학은 부전공은 관련 전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학은 가능하나 학위취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

1. 대학에서의 수학 부전공과목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교원자격증(수학)을 별도로 받는지 아니면 화학자격증에 부기하여 부전공형식으로 받는 것인지?

회신

2009. 8. 25 [교직발전기획과]

- 우선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육대학원의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과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 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교사자격취득학점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공 50학점이상 및 교직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 이를 근거로
- 답변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수학 부전공과목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해당 입학처와 상담을 통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과목 및 학점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만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2) 부기방법은 주전공과 부전공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시하거나 각각의 교사자격증으로 부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대학에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립대학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질의**

-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 2학년이 되는데요,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비사범계인 관계로 올해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을 학교 학사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그곳 홈페이지에서 선발기준을 보니 2008년도 기준으로 되어있더군요. 학과마다 선발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거의 성적 위주인 학과도 있고, 면접의 비중이 높은 곳도 있고, 절반정도씩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요.
- 그런데 작년 모집 시기에 떴었던 공지사항을 보니,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학과별로 상이한 선발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공통기준은 무엇인지요? 학교학사지원팀에 여쭙봤더니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이곳에 질문 드립니다. 그 기준은 제가 알 수 없는 건가요?
- 요즘 취업이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여대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선발기준에 적합하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발기준을 알 수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곳 사이트에서 알 수 있나 했더니 찾을 수가 없고, 학교 쪽 자료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정보를 알 길이



없네요.

회신 2010. 1.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과 관련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과 선발 결과 등은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선발기준의 선정에 있어서 학과별로 상이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도록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으로 전과 내용 질의

질의

- (질문 1) 재적생('09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이 기존 전과제도(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이내)를 적용하여 전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09. 5. 1자부터 모든 재학생도 10%여석 범위 내에서 전과하여야 합니까?
- (질문 2) 정원 외 입학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충원하여 제적 등으로 결원이 없는 경우 편입학, 재입학, 전과는 할 수 없습니까?
- (질문 3) '08학번 이전 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하여 전과를 하고자 하는데, 사범대학 학과별 정원의 10%가 충원되었을 경우 전과를 할 수 없는지요?

회신 2009. 9. 7 [교직발전기획과]

- (답변1) 교과부장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1호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생의 경우도 전과를 실시하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2) 자격증 개수를 입학정원의 110%로 제한하기 때문에 편입학, 재입학, 전과는 가능하더라도 자격증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편입학, 재입학, 전과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답변3) 복학 후 전과도 10% 초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교사 자격증 관련 질의

질의

1.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대학원 성적으로 1정 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1년)은 아주 끝난 것인지, 더 연장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1. 18 [교직발전기획과]

1.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할 경우 1정 연수에 대학원성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으며, 학점의 90%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상담교사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교원양성과정(2급)과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석사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까지 한정운영 하였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통해 자격취득을 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의 기능이 점차 기존 양성에서 현직교원의 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해당 교원양성기관에서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해당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질의**

- 저는 2007년 8월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교육경력 3년이 안되어서 상담교사 자격증은 발급 받지 못하였는데, 제가 다시 학업을 더 이어가고 싶은 계획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의견을 올려봅니다. 제가 다시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공부 하게 될 경우에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다시 석사과정을 더 들어야 하는 건지요?
- 그리고 혹시나 박사과정을 수료만 하게 될 경우에도 상담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박사과정도 하고 상담교사자격증도 받게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합니다.

회신

2010. 5. 31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



항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공과목 +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인정학점 등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므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중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 대학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교사임용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 저는 6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교사로 이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임용을 치려면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2010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니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를 전공하면 자격이 부여되나요?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도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0. 2. 22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 +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의 경우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여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인정학점 등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되

었으므로,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중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교사자격증 발급 가능 대학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교사자격증2급 취득하려고 하는데

질의

- 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자격연수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회신

2009. 12. 14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은 2급의 경우 ①대학 및 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②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에 국가공무원인 교원임용의 경우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대학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 후 전문상담교사 2급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박사 학위자 특별연수로 교사자격증 취득

질의

- 지금 현재 있는 교원자격증도 충분히 남발되어 초등에 비해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이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중등 교원 자격증은 백수자격증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들리는 지경입니다.
- 이렇게 말하면 실정을 모르는 분들은 다들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그런다는 소리만 하네요.



어차피 똑같이 임용시험 치르게 되는데 무슨 상관이나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등 임용 경쟁률이 이미 30대 1이 넘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티오도 확 줄어서 50대 1까지 다들 예상 중이고요. 시기도 지금 임용 한 달 전 정신없을 때를 골라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 너무 우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되는 초등에는 왜 적용 하지 않고 중등에만 적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에 조금이라도 인맥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통해 손쉽게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손쉽게 임용이 될 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교원 임용에 합격하지 못한 사대 졸업생들을 잉여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시대에 이런 정책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회신

2010. 1. 5 [교직발전기획과]

- 우선 기사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이 생략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특별연수과정의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올해 6월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에 관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도 공문으로 배포된바 있습니다.)
 1. 전문계 중고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선박 공예 등 전문적 기술과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예체능 중고에서 승마, 골프 등 특정 예 전문적 기예를 가진 자
 3.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 수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은 현재 각 전문계/예체능 학교 또는 영재학교 등에서 이미 신학점임교사나 강사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인데 기존의 산학점임교사 등으로는 비정규직에 불과한 신분적 불안정성 때문에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정규교원으로 채용 가능성을 열려는 것입니다.
- 위의 분야는 기존의 사범대등 교원 양성기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로서 당연히 기존의 예비교사들과 경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특별연수과정은 이름 그대로 기존의 정규 교사양성 과정에 대해 특별하게 운영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기존의 교사양성체계가 그 수요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양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 기존의 예비 교사 분들께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미래의 교사가 될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실기교사를 취득 방법

질의

- 96학번으로 기능대학을 졸업하고 해당학과관련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자격증을 4종 취득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과에 교직과목이 없어서 교직과목은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실기교사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10. 1. 27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의 경우 현재 수요가 많지 않아 전문대학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에 대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은 전공과목이수 + 교직과목이수 +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 졸업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실기교사 자격증이 발급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능대학 졸업자로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 실기교사 임용 후 교육대학원에서 2정을 취득

질의

- 발령과목 및 임용과목은 상업정보이며, 자격은 실기교사(부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기교사로서 상업정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를 취득(2010년)하면 다시 2급 정교사로 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9. 17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중등 2급 정교사로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인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전과제도 등을 통해 임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는 표시과목을 달리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됨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치료사 준2급 자격을 가지고 실기교사 임용고시에 응시가능한가요

질의

- 교원자격증 실기교사(재활복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임용고시를 응시할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선 임용고시 응시할 수 있다 하셨는데 4년제 졸업도 아닌데 응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 2. 언어치료사 준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임용고시 응시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10. 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 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기교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질의

- 저는 1996년 전문대학 졸업자로 재학 중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업무처리가 정확히 실시되지 않아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을 졸업하면서 받지 못했습니다.
- 전문대학에서 특히 실기과 전공일 경우는 교육학 과목 이수 후 졸업 할 때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이 모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졸업자인 저의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2009. 12. 8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 자격기준은
전공 관련 과목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교직 관련 과목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국가기술자격증 : 실업계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가 수시검정으로 바뀌어 따라 대학 졸업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자격기준 대로 모두 이수 하였다면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실기교사 자격검정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자격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교사를 준교사 자격증으로 갱신이 가능 여부

질의

- 2006년에 대학 졸업하면서 전자계산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09년 8월 26일 ○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에서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혹시 전자계산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 후 4년제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면 준교사 자격증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준교사로 갱신할 수 있는지, 또한, 준교사로 갱신이 된다면, 교원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지?

회신

2010. 1. 18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준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는 실기교사로서의 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준교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실기교사가 준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직교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준교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되십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질의

-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회신

2009. 10. 23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자격증은 전문대학을 졸업과 함께 교직과목 이수 및 자격검증을 통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다면 해당 대학에 자격검증을 통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기교사 기본이수과목 및 자격 기준 여부는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향후 진로는?

질의

-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 을 졸업하며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실기교육론 수업을 이수하여 받은 자격증인데,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다르니 임용고시는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격증으로 어느 곳에 취업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기엔 늦었고, 아이들을 선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활용하려 해보는데 막막해서요.

회신

2010. 2. 22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각 교육청의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원자격 취득관련 문의

질의

- 전 방송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재학 중인데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학년이면 실습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회신

2009. 7. 24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원양성기관이 아니며, 교육실습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상담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또는 대학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재입학하여 교직 및 전공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교사 2급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

질의

- ○ ○ ○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격증수 당이라는게 생겨서 관련분야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라면 매달 기본급의 15000원정도가 붙는 제도가 생겼는데 정교사 2급 (체육) 자격증이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자격증이 무엇이고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차이도 궁금합니다. 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자격증인데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9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국가기술자격증은 관련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무분야별 종목으로 취득하는 기술자격증입니다. 이에 반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 제21」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질의

- 제가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치원 2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즉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2009.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유치원교사자격 취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대 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리 따놓아도 되나요?

질의

-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리 따놓으려고 합니다. 교대를 졸업하면 받게 될 정교사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되는 건가요?

회신

2009. 7. 15 [교직발전기획과]

-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선 교원자격증은 관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며 공인중개사와는 소관 법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임용된 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겸직근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을 열지 않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직이수에 관한 교육실습 여부문의

질의

- 저의 제1전공은 문헌정보학이고 복수전공으로 영어영문학을 이수중에 있습니다. 전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있으며, 영문과에서도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 교직 복수전공 신청원을 과사무실에 냈고, 학적팀에 가서도 제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서 교생실습을 초등학교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영어 교직이수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어 교생실습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 그런데 아는 분께 들어보니, 2008년 전까진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생실습 두 번 다 갔다 왔어야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제도가 바뀌어서 주전공 실습만 갔다 오면 복수전공의 실습은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다른 제 1전공의 경우 그 말이 맞는다고 느껴지지만 사서는 국어나 영어 같은 주 교과목이 아닌 보건과도 같은 특수 교과목이기에 (사서

즉, 문헌정보학과 영어는 같은 부류가 아닌 별개의 과목으로 여기고) 저는 대학생활 4년 동안 두 과목에 대한 교생실습 모두 다 가야 된다고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 학교의 학적팀과 교육실습 담당자 두 곳에 물어봤지만, 어떤 곳은 가야 된다고 하시고 또 다른 곳은 안 가도 된다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헛갈리고 어떡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우, 이번 5월에 있을 영어 교생실습을 꼭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세한 설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0. 2. 9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하며, 교과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 선택사항 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교사 취득방법이 궁금합니다.

질의

- 1993년2월에 미용실기 교사를 취득하고 그 후 계속 학원강사와 대학외래강사, 겸임전임강사를 하고 있는데 실기교사를 취득한 후 5년 교육경력이 있으면 준교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 합니다. 준교사자격검정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무시 형 검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0. 9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 2에 의한 준교사 자격검정은 말씀하신대로 중등학교 실기교사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검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지역의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검정공고를 확인하시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중국어 중등교사 임용가능한가요?

질의

- 북경사범대학 중문학과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중국어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보면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표시과목으로 선발하는 과목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응시자격이 됩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교사양성기능을 가진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교원자격증으로는 교원임용시험에 안타깝지만 응시할 수 없으며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교육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하여 대학원 진학 시 상담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해당 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후 후 교원자격증 취득과 함께 표시과목에 의한 공개전형을 통한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군 복무자에 복수전공 가산점 문의

질의

- 저는 여군을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임용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등교원시험에는 복수전공 가산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산점은 졸업 후 5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자에 한해서 그 기간을 복무연한만큼 연장해 줍니다. 가령, 3년 근무했으면 8년까지 복수전공가산점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산점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중략...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여군은 징집 또는 소집이 아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남군 중에도 간부로 온 군인은 지원이고 육사나 해사 공사, 3사관을 졸업한 인원들도 지원으로

말 그대로 풀자면 이들도 지원이기에 그럼, 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군의 간부전역일 경우 복무연한만큼을 연장인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지원이지만 법안의 말과는 달리 징집 및 소집이 아닌 지원인 남군 간부는 인정해주고 여군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듯합니다.

회신 2009. 10. 21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교원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 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입된 자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 병역의무가 부여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남자가 간부로 근무한 것이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원에 의하지 않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간부로 지원하여 근무하였다 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한편, 장교 등으로 복무한 경우에 있어서도 타 현역병 근무자에 준하여 가산점이 연장되는 기간은 최장 3년까지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등임용시험 접수 시 자격증 발급기관의 기재

질의

- 저는 얼마 전에 중등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 제가 접수한 원서를 확인한 결과 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이 ○○대학교교육대학원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의 자격증 번호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확하였고요. 제가 알기로 자격증 발급기관은 대학이름 즉 ○○대학교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용시험에서 차후에 합격이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1차 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회신 2009.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의 발급기관의 기재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기준으로 발급하오나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 따라 달리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용시험 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되는 방법

질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범대 초등교육과나 교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아예 없나요? 혹시라도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대 편입이나 사범대 편입으로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따도 되나요?

회신

2009. 10. 9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사항은 교사자격 종별이 다르므로 말씀하신대로 사범대 초등교육과나 교대를 이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다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 드립니다.
- 다만, 산학겸임교사 또는 방과 후 교사 등의 계약직교원으로서의 개별임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기계, 금속) 자격증 문의

질의

- 제가 현재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기계, 금속)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각 듣기로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경력 3년이 있으면 1급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력 이라하면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직업학교에서 기계설계 담당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직업학교에서의 교사경력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경력 3년경과 후 1급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관련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학교의 경우 노동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 영어교사 자격

질의

-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 후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요. 전공은 심리학이구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을 더 맞추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09. 10. 29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해당 교원양성기관에서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해당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의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중등정교사(2급) 자격 8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판단여부는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하며, 전임강사의 임용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출신대학에서 전임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정교사2급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 시 동점자 처리규정 중에 군필자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여군사관 3년을 복무한 전역자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초등 임용 시험) 동점자 처리규정 중에 군필자는 더 유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필증명서류로 주민등록 초본만이 제시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여군 전역 자는 병적증명서로만이 증명 가능합니다.
- 저는 병역의 의무는 없었으나, 국가를 위해 3년간 복무하였고, 모든 여건은 남자 장교들과 같았습니다. 남자 장교들이 병사로 복무하지 않고 장교의 길을 선택했듯이 저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군 전역자도 남성 전역 자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국가를 위해 일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성도 똑같이 군복무를 증명하고, 동점자 처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병적증명서를 임용공고문



에 공적으로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2009. 10. 2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한자에게는 동점자 순위결정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동 조항에서는 명문으로 남여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으나, 병역법 제3조에서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자가 군복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동 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동점자 순위결정시 우선순위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임용고시 지역가산점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자식이 지난해초등 임용에서 경기도를 지원했는데 지방학생들에게는 너무 불공평 한 것 같네요 다 같은 국민인데 지방학생에게는 가산점이 -8점이라는 것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방도 발전을 시켜서 서울 경기처럼 많은 인원을 뽑는다면 굳이 서울 경기로 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90명을 뽑았습니다.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데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합니까?

회신 2010. 3. 29 [교직발전기획과]

-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과거에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해당 지역에서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별 형편을 고려하여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 안에서 지역가산점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산점 10%에는 지역가산점 외에 영어능력, 국가기술자격 등 교육감이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어떤 요소를 어느 비율로 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각 교육청마다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타시도 교대 출신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사임용시험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바, 동 지역가산점

부분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초등임용고시 제도개선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올해 임용을 준비 중인 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교원 임용 시험 전형이 3차로 늘어났고, 1차에서 2배수, 2차에서 1.5배수 3차에서 1배수를 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1차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에서 1.2배수 3차에서 1배수를 최종 선발하는 방향으로 전형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분명한 채점 기준이나 답안이 공개되지 않는 2, 3차 시험(논술, 면접)에서 1차 시험과 동일한 변별도를 주기 보다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1차 시험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만일 사실이라면 바람직한 변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소문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질의합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이 다 보니 이런저런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식적인 관련 기관에 입장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 만일,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시다면 이러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지의 여부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09. 8. 31 [교직발전기획과]

- 교과부에서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교원임용시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안)에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시여부는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제도를 변경하는 데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가 필요하므로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컴퓨터 교육 전공 학생 임용고시 관련

질의

현재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여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어떻



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교육대학원에서는 아직 컴퓨터 교육전공으로 중등교사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일까요?

회신 2009. 7.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자격취득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용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취득과 임용은 별개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컴퓨터교육 관련 표시과목 또한 동령에 의거 실업계열 표시과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해당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원정원확보와 관련된 사항이며 하반기에 관계부처의 임용정원을 받아 채용하므로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2000년 이후 부터는 현직교사의 심화과정으로 양성기능 보다는 연수기능으로 설치 인가하여 현직교사의 한하여 조건부 입학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승인인가도 허가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특수과목 중등임용고시 임용가능한가요?

질의

- 저는 사범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여 중등2급 정교사(가정)과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현재 중등특수교육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자격증 전공이 중등특수(국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중등임용고시를 응시 할 경우 특수(가정)으로 있는 곳도 응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0. 13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통합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 특성상 특수학교가 많아 과목별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다만,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일반학교 교사와 특수교사는 교사의 종별이 다르므로, 중등2급 정교사(가정) 과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중등특수(가정)에 응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수교사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요건

질의

- 교육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4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되어있습니다.
1. 중등2정을 소지한 자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2정을 취득한 후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특수교사 교육경력 1년이 경과된 후 특수1정을 신청하는데 4호를 적용하여 특수1정 발급이 가능한지요?
 - 위와 같은 분들은 중등2정을 가지고 있고 특수교사 교육경력이 1년 있으며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특수1정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아무리 중등2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만 1번의 대학원 경력으로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에서 특수2정을 받은 경우는 1호나 2호로 특수1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4호의 교육경력이 해당소지자격에서의 교육경력인지요 아니면 유·초·중등2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소지자격에서의 교육경력이 아니어도 되는지요?
 - 개인적 판단으로는 4호의 취지는 중등2정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소지자격(중등2정)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이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를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4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신

2009. 11. 23 [교직발전기획과]

1. 중등2정을 소지한 자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2정을 취득한 후 특수교사로 임용되어 특수교사 교육경력 1년이 경과된 후 특수 1정을 신청하는데 4호를 적용하여 특수 1정이 발급가능한지?
 - > 발급 가능함
2. 4호의 교육경력이 해당소지자격에서의 교육경력인지? 유·초·중등 2정 자격만 소지하면



되는지?

-> 4호의 경우 유·초·중등 2정 자격만 있으면 가능함

* 본 규정은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개정된 사항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한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교사 중등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문의

질의

- 저는 올해 특수학교 중등 2급 교사자격증(재활과 복지) 취득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치료교육이 폐지됨으로 인해 재활과 복지과목으로 바뀜으로써 일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동일하게 중등 특수 임용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한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다시 말하면, 전공 구분 없이 뽑는 곳에 지원 할 때 교사자격증(재활과 복지)만 가지고 있다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임용시험 기회는 계속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3.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16호, 2007.10.26)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다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로 규정하며,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 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등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전공 구분 없이 임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각 표시과목에 맞는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대학원 입학.

질의

- 이번에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입니다. 지금은 대학교가 아닌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중등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취득하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3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교육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저는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대학교가 아닌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 자격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이 경우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반드시 대학에서 취득해야 된다는 말이 없기에 제가 교육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10. 29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교원양성과정(2급)과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석사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통해 자격취득을 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의 기능이 점차 기존 양성에서 현직교원의 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해당 교원양성기관에서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 해당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기준 질의

질의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 자격란에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또는 초등 등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자격증이 현재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유치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2.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에 명시된 법은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유치원 정교사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등 교육법이 유아교육법을 포함한 것인가요?
3. 해당 자격증으로 유치원에서 교사로도 근무 가능한 것인가요?

회신

2009. 9. 14 [교직발전기획과]

답변1.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은 유치원자격증과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이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관련전공 38학점과 특수교육관련전공 42학점 교직과정 22학점 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답변2.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는 유치원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교교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교사와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답변3. 해당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수학교에서 유치원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표시과목 변경 관련

질의

○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데 재할복지로 정정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직이수를 했는데 1년 일찍 졸업했다는 이유로 표시과목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치료교육 이라는 표시과목을 특수학교(중등) 2급 정교사 재할복지 로 표시과목을 변경 해주실 수 있나요?

회신

2010. 1.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916호 2007. 10.26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

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용시험 응시 시에도,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활복지 과목에 응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표시과목 변경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현직 교원은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 변경된 표시과목(재활복지)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 교원으로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질의

- 2008년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교육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 각 대학에서 실기교사자격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교육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시에는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실기교사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정규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사람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학사학위에 같은 교육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전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4년제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 및 개선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0. 1. 5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의 경우 현재 수요가 많지 않아 전문대학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에 대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의 자격기준은 전공과목이수 + 교직과목이수 +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미국국적자 영어교사 되는 방법?



질의

-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써 현재 한국에 2년째 거주 중입니다.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 미국 워싱턴주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1999년 Kentwood High School 을 졸업하였습니다.
- 한국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 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거쳐야할 대학원이나 자격증 같은 것과 진로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라는 것을 보통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영어교사가 되는 조건이 있나요?
- 미국 대학원을 진학시 어떤 조건과 학교를 가면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될수 있는지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각 각의 경우에서 제가 현재 나아가야할 진로계획을 정확하고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학교를 예를 들면 어떤 대학원, 무슨 학과를 한국과 미국에서 나와야 하고 어떤 자격증을 한국과 미국에서 따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할 것인지 미국에서 할 것인지 아직 미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신

2010. 6. 16 [교직발전기획과]

1.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는 먼저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 입학이 가능하오니 입학 전에 관련학과 인정여부, 학부때 취득학점 인정여부를 대학원과 상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의 정규교원 임용 가능성

외국인은 헌법에 따라 공무원임권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중등교원 지망

질의

- 전공은 러시아문학이나 러시아어 이외에도 독어, 불어 등 여러가지 외국어가 가능합니다. 학부 때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혹 지금부터라도 정식교원이 될 방법이 있는지요? 정식교원이 어려우면 특활 등 다른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는지요?

회신

2009. 9. 22 [교직발전기획과]

- 우선 중등교사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계는 국내의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의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해당 표시과목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발급기관인 해당 대학에 교원자격증이 취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외국에서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직 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대학원 진학시 외국에서의 전공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 입학과 자격증 취득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 이외의 방법외에는 중등교원자격취득의 방법을 안타깝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과목 강사로 위촉되어 계약직으로 임명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항임으로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정보란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 국가근로 장학금 관련

질의

- 기존 매달 10일 지급되던 국가근로 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한학기가 끝나고 일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국가근로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이며, 소득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0. 4. 5. [대학장학지원과]

- '10. 1학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학생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학금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월별로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국가장학기금사이트 출근부 입력방식

질의

- 제가 현재 지금 학교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기금사이트에서 출근부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란에 출근부 입력을 해야 하는데 만약 오늘 일하면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 그 기간에 못하면 입력도 안 되고 소속대학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금 얘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력기간을 그 달로 한정하면 좋겠습니다.

회신

2009. 12. 2. [대학장학지원과]

- 근로내용 입력에 5일의 기한을 둔 것은 근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부정·허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5일 전의 근로내역을 세세히 기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작위적인 근로시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근로 시간이 누락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근로시간이 과장되게 입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실히 근무하고 이를 기록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바, 근로내용 입력에 기한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생들에게 매번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허위 근로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근로장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



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 장학생 시간 단축

질의

- 한국장학재단에 공시된 근로시간은 주당 학기 중 20 방학 중 40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학동안 주당 15시간만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20% 학교가 80%가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방학 중 주당 40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을 학교 측이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이걸 근로비가 아니라 장학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요?

회신

2010. 1. 25. [대학장학지원과]

- 국가근로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업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가 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시간 상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서 그 이내에서 운영은 대학 자율 결정사항입니다. 또한 국가근로 장학금은 정부 예산 80%와 학교 대응투자 20%로 이루어지므로 대학에서 예산 및 학사 과정에 맞춰 적정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과 근로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국가근로 장학생 지원 예산이 줄었나요?

질의

- 저번 겨울방학부터 학교에서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근로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었고, 저번 겨울보다 시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근로가 시급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고 학교에서 하는 거라 수업이 없는 빈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정말 메리트도 많고 도움이 많이 되어 이번 방학에도 국가근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잘려서 국가근로 장학생을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 일례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12명이 수업 없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이번 방학때는 3-4명 많아야 6-7명밖에 뽑지 못한 다는 겁니다. 예산이 잘려서라네요. 정말 당

혹스럽습니다.

- 저번 겨울 때는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받아서 쓸데없는 근무 직을 만들더니 이번 여름에는 결국 예산 잘려서 많은 국가근로 장학생들을 내보내다니요. 물론 학교가 예산계산을 잘못 해서 잘못 배정 받아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예산 지원하실 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지원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신 2010. 6. 3. [대학장학지원과]

- 국가근로 장학금 예산이 감소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 '09년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으로 수혜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 내년도 국가장학 사업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력증명 확인서 발급

질의

-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근로 장학생은 경력증명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국가근로 장학생 경력확인서 발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2009. 1. [대학장학지원과]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국가근로 장학금의 목적이 근로의 목적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근로 장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

- 대학생이 국가근로 장학금은 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요?



- 생활보호대상자가 근로장학금 때문에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2. 25. [대학장학지원과]

- '10. 1학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학생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학금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월별로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연구 장학생(이공계) 대학원생 미선발 관련

질의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공계는 선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7. 1. [대학장학지원과]

- 귀하께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장학선발제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BK21, 실험실별 프로젝트 등으로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낫다고 판단되어 지원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공계) 선발 방식에 관해서.

질의

- 국가장학생(이공계) 선발 방식으로 '03년부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대학 선발인원은 유형별(수능성적 및 입학성적) 선발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나요?

회신 2010. 5. 12. [대학장학지원과]

- 국가장학금(이공계) 선발 방식에 관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학별 선발인원 제한은 특정 학교로의 장학생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동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이 모두 배정되는 바, 이는 “장학 기회 확대”라는 장학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9년도의 경우 3,179명 중, 서울대 618명, 연대 449명이 선발되어 학교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데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정부학자금대출관련(대출 소요기간)

질의

- 합격자 발표가 1월 29일 저녁에 있었고 대학 등록은 2월 2일부터 9일까지라서 2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서류 준비를 하여 은행에 제출을 했는데, 취업 후 상환하는 대출은 이미 1월 28일에 끝이 났으며 일반 대출만 가능한데 그나마도 심사 기일이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회신

2010. 2. 9. [대학장학지원과]

-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는 2010년 1학기부터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성적요건을 갖춘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학생의 소득분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여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입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신청기간을 1월 28일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연초 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 지연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등록금 납입기한을 2월 9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 또한, 1월 28일 이후 신청하는 신입생의 경우 일반학자금 대출은 실행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학자금 대출이 2월 9일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10.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소요기간 단축(평균3일) 등 제도 개선하였으며, 일반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든든학자금의 자격(소득, 성적)을 충족하는 학생이 든든학자금으로 전환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2010학년도 신입생의 생활비 대출 요건



질의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생활비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지급되면서 나온다고 한 생활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생활비대출 요건은 총3개라고 합니다. 1. 대학등록여부 2. 소득분위 3. 성적입니다. 저는 대학 등록도 하였고, 성적기준도 되지만 소득분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신

2010. 4. 12 [대학장학지원과]

- 2010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만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와 같이 성적요건 또는 소득기준이 되지 않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비는 대출되지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학자금 지원 대상범위를 해외유학생까지 확대하여 주세요.

질의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국내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신

2009. 11. 24. [대학장학지원과]

- 현행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담보 및 연대보증 없이 최장 20년간 고정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0년부터 든든학자금을 도입하여 재학 중 필요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를 시행중이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만 대출 가능합니다.
- 현재,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학생 대출제도 및 장학금 확대 시행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 첫째, 정부의 재정부족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 평균 1.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

은 제도가 안정된 이후에 정부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나, 기금의 안정화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현재 유학생에 대한 대출은 어렵습니다.

- 둘째, 해외의 경우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제도는 각 대학의 관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학점, 성적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추천, 등록금 확인, 이중수혜 방지, 대출학생 신상변동 관리 등) 외국 대학의 경우 이러한 대학 관리가 어려우므로 학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 무상장학금의 경우,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생까지 확대할 수 없는 것은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 군복무중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관련

질의

- 저는 2006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2008년 1월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장학금 제도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부학자금제도로써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간 군복무를 하니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 요즘 정부학자금대출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군 복무 2년간 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았고 은행에서 정부학자금제도를 관리하였습니다.

회신

2010. 6. 29.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정부는 군복무시 경제활동을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사병이자납부유예제도”(제대 후 분할하여 상환)를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군 복무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특별 보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정대상(군입대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또한 근거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는 군복무기간 동안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후에 유예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05-2



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해당됩니다. 동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각 대학, 군부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군 전역 후 복학생 등록금에 관하여

질의

- 군 전역 후 복학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 입대전과 군 전역 후 등록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국방의 의무기간동안 인상된 등록금 금액에 대해선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0. 2. 2.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대학의 등록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교과부가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정부는 2010년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의 일부 반환

질의

- 학교를 자퇴하면서 등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5/6밖에 못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회신

2010. 4. 9.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에 근거하여 입학포기 또는 자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군 입대 휴학생 미복학 제적의 경우 등록금 반환

질의

- 제 슬하의 아들 하나가 2006년 6월경에 군입대를 사유로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복학 예정 시기는 2009학년도 2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는 2006년 9월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경에 다시 우체국에 공익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2009년 7월 16일에 공익요원 근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 2학년 1학기 복학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창신대학에 물어보니 이미 제적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2009년 2월말까지 복학을 위한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적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러면 제적을 시키기 전에 고지를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였고 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 수 년을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혀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화 한통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복학 할쯤이면 수업료가 많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2006년 2월경에 2학년 1학기 등록금 220여만원을 미리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라도 반환해 달라고 하니 제적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학에 입학할 시기에는 늦은 밤에도 전화를 걸어 한사람의 신입생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수업료를 미리 내 놓고 나니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적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제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령에 찾아본 바로는 휴학한자의 수업료는 분명히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제적해 놓고선 이제는 수업료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 제 짧은 소견으로 ○○대학 측에서는 법령에 의거 분명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0. 3. 31.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6조』의 반



환사유 및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퇴 신청 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보아 학기개시일의 경과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반환 규정이 없어 재학 중인 대학에 휴학기간의 종료 후 재신청 (복학 또는 자퇴)을 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된 경우 반환이 불가능하였으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6조 제3의 2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근로장학금

질의

- 저는 기초수급학생입니다. 요즘 근로장학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돈을 한 번에 받는다면 그것은 장학금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회신

2009. 11. 24. [대학장학지원과]

- '10. 1학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학생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학금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월별로

근로장학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학비 지원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인 경우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혹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비 지원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학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폭 넓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 예를 들어서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액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회신

2010. 12. 7. [대학장학지원과]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재학생은 연간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10년 신입생은 연간 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과 무상생활비 200만원(학기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하나,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등록금이 연간 450만원 미만인 학교 재학생의 경우 지원 금액이 등록금액수가 됩니다.

- 예) 학기당 지원 장학금: 230만원인 경우

A학교 한 학기 등록금 금액: 300만원인 경우 ⇨ 230만원(장학금 지원) + 70만원(본인부담, 학자금대출 이용, 교내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B학교 한 학기 등록금 금액: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장학금 지원)

결국, 대학의 등록금 금액 따라 등록금 전액 무료 여부 결정됨.

기초생활수급자 성적제한

질의

- 제가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제자식이 이번에 전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적기준을 없애주십시오.



회신

2010. 12. 07. [대학장학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의 경우 예전부터 성적요건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2010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했으며, 신입생의 경우 성적요건으로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와 같이 수능 성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인 내신 6등급 이내인 경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장학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성적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학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근로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대학생 근로 장학금]
 1.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2. 대상 : 대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3. 지원 금액 : 시간당 지원 단가 6,000원~8,000원
 4. 신청방법 : 각 소속 대학(교)
 - *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추천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 가능
 5. 근로대상기관 : 전공 관련 산업체, 학내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관련

질의

-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학자금을 장학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말하며 차등을 두거나 제한을 뒤서는 안 되는데 또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성적과는 상관없이 지원

받도록 해야 합니다.

회신 2010. 12. 7. [대학장학지원과]

- 저소득층 장학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금의 지원 취지는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학업 수행의 의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성적 기준 80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이상이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그 누적비율을 심사한 뒤에 정한 성적기준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언제 되나요?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생활비 신청했는데 언제쯤 지급되는지요.

회신 2010. 12. 7. [대학장학지원과]

- 2학기 6월 4일 이전 미래드림 1차에 신청하신 경우 장학금은 11월 1일 일괄 지급 되었으며, 무상지급생활비는 9월 30일, 10월 1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 2학기 9월 30일 이전 미래드림 2차에 신청하신 경우 장학금은 11월 6일 일괄 지급 되었으며, 무상지급생활비는 12월 1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 요청

질의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정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12. 7. [대학장학지원과]

- 정부는 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3인 이상) 가정의 셋째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 **(대출대상)** 소득7분위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100점 만점 80점 이상(B학점 이상)
 - * 장애우는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점 100점 만점 70점 이상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상환기준 및 의무상환액)**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
- **(상환방법)**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하여 국세청을 통한 원천공제
 -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 통한 신고·납부
 - * 양도 및 상속, 증여소득 : 신고·납부

저신용자의 대학 등록금 대출

질의

- 2학년 등록금 약 430 만원을 12월 달에 (장학재단에 신청했는데 그만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저희 딸이 작년에 휴대폰 요금을 못 내서 (제가 사업하다 조금 힘들어서 그만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등록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회신 2010. 2. 17.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정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 중 B학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수능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이 되면 대출신청 대상자가 되며(연간소득에는 재산 보유 등에 따른 소득이 포함됩니다)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시행 혹은 카드 납부 허용 법규 제정요청

질의

-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와 분할납부가 허용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2. 5. [대학장학지원과]

- 학부모의 편의 제공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과 납부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교과부에서는 그 동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분납·연기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여 왔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감면 또는 국가의 수수료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수료율 감면 및 연간 125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만, 카드 수수료는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카드할부 이자(15~25%)로 인해 오히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학(350개)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를 통해 일시적 목돈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편의를 위해 대학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문의

질의

- 교육법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퍼센트는 등록금 수입(순수 학교 교비)의 10퍼센트로 봐야 하는지 아님 등록금 수입이외의 외부기부금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순수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만 해당되는지 아님 교내장학금 및 외부장학금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4. 16.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동 조항은 저소득층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대학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면제 또는 감액 금액에 외부기부금, 보훈장학금 등 외부장학금, BK21 등의 장학금은 제외되며, 순수 등록금 수입 재원에서 지급되는 교내장학금만 해당됩니다.

☉ 대학 입학금 부과기준 및 용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신입생 입학금은 슬그머니 올려 사립대학 경우 무려 100만원이 넘기기도 한다.
- 문제는 입학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학교별로 책정기준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수업료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입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부과기준 어떠한지,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4. 7. [대학장학지원과]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금은 동 조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지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됩니다.
- 정부는 2010년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 하에서 입학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 시 등록금 자동 소멸.

질의

- 제가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학기 휴학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대학교 환불 규정에 의해서 1/4 기점을 지난 후의 휴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소멸된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 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의 의거하면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지금 휴학할 시에 등록금의 3분의 2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학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

2010. 4. 12.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규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입학포기, 자퇴 등이 반환 사유에 해당되며, 휴학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학으로 인하여 등록금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학은 동 학칙 조항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질병휴학 또는 군 입대 휴학 등은 동 학칙의 등록금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해당 대학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 산출방식 질의

질의

- 민원인이 귀 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접수번호:949762, 2010.1.8)에 첨부된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 율에서 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의 구체적 산출방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2. 18. [대학장학지원과]

- 귀하의 요청에 의해, 공개해 드린 [최근 5년간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현황] 자료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산출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간 계열별 평균등록금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수업료만 해당됩니다.

☉ 대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 산출방식 추가 질의

질의

- 질의1. 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은 당해 연도 수업료 수입 총액을 총 재학생수로 나눈 금액 인지요?
- 질의2. 재학생수는 1학기의 경우 4.1현재, 2학기의 경우 10.1현재 인지요?
- 질의3. 복학생의 경우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그래도 전체 재학생수에 포함시켜 1인당 연간등록금을 산출하는지요?

회신

2010. 2. 19. [대학장학지원과]

- 답변1. 학생1인당 연간등록금 = 등록금수입 총액 ÷ 재학생 수
- 답변2. 재학생 수 : 해당연도 3.1 현재 기준
- 답변3. 재학생 수 : 휴학생 수 제외 (참고로, 2007년까지는 위 기준(학생 수 기준)으로 1인당 연간 등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2008년 이후부터 학과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지원제도에 대한 즉각 개선 요청

질의

- 올해 시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는 우선 신청기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고 신청기간도 정시합격자 발표일등 학사일정에 맞게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학자금 대출신청의 <생활비 지원>이 너무 늦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기 초인 3월중에 조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3. 4. [대학장학지원과]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작년 말 든든학자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10학년도 1학기 시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 후 1월 18일 관련법이 통과하여 10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대교협과의 협의를 통해 신입생 입학과 등록금 대출일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입생 신청기간인 1월 28일을 넘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지급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련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대학원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반납

질의

- 제가 2010년 3월 2일부터 2010년 4월 30일경에 대학원을 자퇴를 하였습니다. 등록금은 총 6,565,000원이었고, 연구장학금으로 2,000,000원 / 학자금 대출로 4,56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대학원 자퇴 시 1/2 수업기한이 4일이 지나 제가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퇴를 하였고, 한 달가량이 지난 5월 25일경 자퇴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장학금 중 1,347,826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학교 교칙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반환사유발생일이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하게 되어있고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까지는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해준다는 교칙을 보았습니다.



- 제가 3월 2일 입학하고 4월 30일 경에 자퇴하였으니 일수로 따지면 딱 60일되는 날 자퇴를 한 것이 됩니다. 정확히 60일이라 2/3에 해당하는지 1/2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애매하지만 최소라 가정하고 계산하여보면 최소 수업료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학교 측에서는 반환하여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위의 경우 장학금을 제외하고 제가 납부했던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등록금 환불금액을 계산할 때 장학금 포함 원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위의 경우 처럼 제가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 등록금 환불 및 연구장학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회신

2010. 6. 13.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규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학기 개시 일을 기준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 반환사유 발생일은,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써, 자퇴 신청서가 대학에 접수된 날짜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규칙에서 반환해야 할 등록금은 귀하께서 직접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학기개시일 이후에 자퇴 신청을 하였으므로, 납부한 등록금 중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3,615,000원)를 기준으로 차등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조교장학금은 조교로써 근무한 일종의 근로 장학금의 성격이므로, 재학을 전제 조건으로 지급되며 중도에 자퇴할 경우,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본인이 학교 측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대학 홈페이지 > 전자규정집 > 「조교인사규정」)

※ 해당대학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 807,500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미복학제적의 등록금 반환 가능여부?

질의

- 2000년 3월에 컴퓨터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4월 중순까지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000년 9월경에 제적 처리되었다는 학교 측에 통보가 있었습니

다.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2. 22.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6조’의 반환사유 및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휴학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을 기준으로 반환 액이 결정되며,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의 반환은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퇴 신청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보아 학기개시일의 경과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며, 미복학 제적의 경우에도 관련규정의 반환사유에 해당됩니다.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부과 시 법에 정해진 수납이외의 규칙이 존재하는지?

질의

- 수강 과목 중 한 과목에 과락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하여 새 학기에 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하여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 20여만원이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 현행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회비는 학교법에 나와 있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잡부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때 기성회비를 함께 등록금에 포함해서 받는다면 이는 이법의 취지로 보이며, 같이 수납한다면 모순으로 보입니다. 학생회비 등과 같이 학생 개인이 판단하여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등록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정확한 정의)?,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가 예전에는 기성회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업료에 포함되어 입학금 수업료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기성회비는 법에 있는 내용에 따르는 것이 맞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기성회비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등록금으로 보이는데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요? 또 법에서 수업료 등을 수납할 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수납토록 되어있는데 기성회비는 법조문에 없다하여 법에서 정한대로 금액을 받지 않고 있는데 기성회비는 어떤 근거에서 학생들에 고지하는지, 법에서 정한 수납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2. 25. [대학장학지원과]

- 각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에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와 기성회비 모두 동 규칙을 적용하여 차등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

질의

-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번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고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환불 받을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자퇴 이외에는 절대 등록금 환

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하는데 받을 방법은 없나요?

회신

2010. 2. 23.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6조’의 반환사유 및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정하고 있고, 휴학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을 기준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며,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의 반환은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퇴 신청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보아 학기개시일의 경과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며, 휴학은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질의

- 유사사례에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30일전까지 자퇴를 한다면 5/6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 이제 개강이 다가왔고 바로실습기간인데 계속 고민하다가 등록금을 넣긴 했는데 3월2일 개강 일에 자퇴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신

2010. 3. 2. [대학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6조'의 반환사유 및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정하고 있고, 휴학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을 기준으로 반환 액이 결정되며,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의 반환은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퇴 신청 일을 반환사유발생일로 보아 학기개시일의 경과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의 수능성적 적용

질의

- 최근 수급자가정에게 지원했던 생활비 200만원을 수능성적6등급인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다른데 제가 지원한 학교는 수시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수능최저등급이 필요치 않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수시1차에 합격하여 수능을 보지 않았는데 수능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보도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해주셔서 수능을 안 본 학생들은 학교내신 성적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신

2010. 1. 18. [대학장학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의 경우 예전부터 성적요건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0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할 계획이며, 신입생의 경우 성적요건으로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와 같이 수능 성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인 경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장학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성적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학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근로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니 입학하려는 대학에 문의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업료 반환규정 질의

질의

- 교육법전을 보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두 개가 있습니다.
- 이중 반환관련 별표를 보면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의 금액이 각각 1/3과 1/2이 있는데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쪽 조항을 따라야 합니까?

회신

2010. 4. 16. [대학장학지원과]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하여 종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유치원,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05.3.24)을 계기로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규칙으로 제정함에 따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3호, 2007.3.23 제정, 현(現)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5.7 일부개정)

-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으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현재 국·공·사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으로 개정되었으며 반환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5
 -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2
 -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정부학자금대출제도에 따른 저신용 등급자 양산문제

질의

- 장학재단의 제도 중 [신용유의자등록유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 이상 6개월 연체자에게 졸업 후 2년까지 신용거래내역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왜 며칠

의 지연 입금은 어떠한 신용구제방안도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회신 2010. 4. 21. [대학장학지원과]

- 학자금대출 이자 연체기록은 각 은행에서 국가장학기금으로 이관되는 금융 전산기록이므로 임의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는 사항은 알겠으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개인의 소액연체는 대출자의 의무로서 학생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청년 양산

질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었으며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회신 2010. 6. 11.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09. 5. 7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이후 정부학자금 대출은 재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09. 2학기 이전 학자금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시중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현재 채권 관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실행과 더불어 고객의 연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연체예방및관리세칙

제5조(연체관리) ①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금의 연체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 1개월 이내 : 연체 발생 즉시 SMS를 통한 연체 사실 통보 및 SMS, E-mail 등을 통한 연체정리촉구(최소 2회 이상) 등
2. 연체기간 2개월 이내 : 연체기간 1개월경과 시 SMS 및 E-mail 등을 통한 연체정리촉구(최소 2회 이상) 등
3. 연체기간 4개월 이내 : 전화 독촉(최소 4회 이상)
4. 연체기간 6개월 이내 : 연체기간 4개월경과 시 전화 독촉(월 4회 이상)



- 귀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은 개인의 상환 약정에 따라 실행되며, 상환 및 이에 대한 관리 의무는 대출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참고적으로 모든 금융권과 정부기관에서는 본인이 작성하신 주소(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전화번호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내역을 저장하고 있어, 만약 개인정보 변경 시 이를 알려야할 의무는 개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시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여부

질의

- 제 아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모상의 없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받아써버렸더군요.
- 2010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한 대출을 하면 돈이 학교로 입금된다던데, 학자금 대출인데 아들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건지요.

회신

2010. 4. 7. [대학장학지원과]

-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대학생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 학교로 돈이 입금되지만, 학교 등록금 납입기간이 학자금 대출 기간보다 빠른 신입생의 경우 우선 등록금을 학교에 납입하고 학생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록금납입을 못하여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의 정부학자금 지원

질의

- 저희 집 경우 대학생이 세 명입니다. 셋째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조건에 들어가던데요. 참으로 황당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죠. 장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는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합니다.

회신

2010. 4. 12. [대학장학지원과]

-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로서는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는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ICL제도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제도가 안 정된 이후에 정부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의 생활비 대출 불가

질의

-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겨우겨우 등록금은 구했는데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신

2010. 3. 31.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신입생이 경우에는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경우(B학점 미만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상)에는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생활비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학자금대출 문의 드립니다.

질의

- 저는 서울 모 항공전문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이번에도 저에게까지는 도움이 되질 않더군요. 여러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하신 문건을 보고문의 드립니다.
- “평생교육기관 중 학교의 형태를 갖춘 사이버대학 및 전공대학 등은 대출 지원 중임 이라고 하시던데요 대출지원을 더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0. 1. 25. [대학장학지원과]

- 2005.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비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 및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에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정부 재정상 ‘고등교육법 제2호에 규정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의한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등만 대상이 되며,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성적장학금 수혜자의 규정에 관한 질의

질의

- 학적변경의 개념 및 규정?
- 졸업예정자의 개념 및 규정?
- 졸업예정자의 범위?
- 부·복수전공의 개념?

회신

2010. 3. 25. [대학장학지원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규정이 법령에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질의 건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학사관리)의 해석 및 해당 대학 학칙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적변경의 개념 및 규정? [일반적 해석] 학적에는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전과(부), 부전공, 복수전공 등의 사항이 포함됨 [학칙상]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전과, 복학, 졸업, 재입학 등 학생의 학적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 졸업예정자의 개념 및 규정? [일반적 해석] 통상 수업연한(4년이라면 8회) 이상의 등록과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이수 후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함 [학칙상] 1)정규학기를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단, 조기졸업자는 제외) 2)졸업 최저 이수학점(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필수(전공, 교양)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4)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조기졸업자는 3.5 이상) 5)본 규정의 졸업학력평가 심사에 합격한 자 6)편입학생의 경우 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선 이수 기초교과목을 이수한 자 7)기타 및 학과(전공)별 졸업요건을 별도 지정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이를 충족한 자
 ※ 졸업예정자는 장학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자의 범위? [일반적 해석] 통상 수업연한(4년이라면 8회) 이상의 등록과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이수 후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함 [학칙상] 졸업예정자는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과 위 졸업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문2의 졸업자격기준에 적합한 학생임

- 부·복수전공의 개념? [일반적 해석] 통상 부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학부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일정 수 이상 각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하고, 복수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한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함 [학칙상] 복수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전공, 복합 학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함을 말함.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도 졸업은 가능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 취득학점이 21학점을 넘을 경우 부전공으로의 전환신청이 가능함. 졸업 시 복수전공학위의 취득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추가학점을 이수하여 복수전공학위를 취득하려면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 연기원을 제출하여 졸업을 유보하여야 함. 부전공과정은 부전공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부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여도 졸업은 가능합니다. 졸업 시 부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하려면 졸업 연기원을 제출하여 졸업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상태에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 중 전공과목을 정상 이수하였으므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고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졸업예정자로 사료됩니다.

차상위 복지대상에 대하여

질의

-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월 소득 기준부적합이라고 차상위 장학금지급을 거절을 받았습니다.

회신

2009. 9. 10. [대학장학지원과]

-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 이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증명서로 ①한부모가족증명서 ②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③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④자활근로자 확인서 ⑤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요금감면대상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증명서 포함)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명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가족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받고 있습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차상위 계층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득이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증명서 발급에 대한 협의,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가요?

질의

- 첫째, 차상위 계층 자격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구분해 놓고 확인서류는 소득관련서류가 아닌데 왜 그런 명칭을 사용하나요.
- 둘째,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방법을 아시나요.

회신

2009. 9. 8. [대학장학지원과]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격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개념입니다.
- 확인 서류도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증명서로 ①한부모가족증명서 ②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③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④자활근로자 확인서 ⑤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요금감면대상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증명서 포함)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확인서 관련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저희 쪽에서도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차상위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요청한 상태이고, 불가능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소득을 통한 차상위 계층 확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차상위 장학금 지급방법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차상위층 장학생을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방법이 저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학기에 학자금 대출 받은 돈을 자동으로 상환한다고 합니다. 취업하면 당연히 상환을 할 생각인데,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제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4. 26.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저소득층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지원의 이중지원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질의

- 든든학자금의 신청 자격 및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2. 17. [대학장학지원과]

- 든든학자금은 재학기간 중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 일정기준 소득 이상 발생 시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자는 대출 다음 달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고, 거치기간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6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재학기간 중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시행(학기별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2010년 신입생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가능 하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가능
- (대출대상) 소득7분위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직전학기 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 이상 이수



- * 신입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가능
- *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무상지원 또는 대출
 -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소득1-3분위(무이자), 소득4-5분위(ICL방식), 소득6분위 이상(일반대출방식)
- (대출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
 -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
-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 * 매학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 ☞ ('10-1학기) 5.7% → ('10-2학기) 5.2%



'10학년도 신입생의 취업 후 상환대출기간 문의

질의

- 취업 후 상환대출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서류를 받아주실 수 없는지요.

회신

2010. 2. 2. [대학장학지원과]

- '10. 1학기 신입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접수 기간은 1월 15일부터~1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3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자격기준이 충족되면 다음 학기에는 원하시는 제도로 이용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소득기준 문의

질의

- 든든학자금 제도가 시행되어 한시름 놓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득분위가 7분위 이상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회신

2009. 1. [대학장학지원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성적요건을 갖춘 소득 7분위('10년 기준, 연간 소득 인정액 4,975만원)이하 학생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시행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 평균 1.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제도가 안정된 이후에 정부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8분위 이상의 대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성적기준 문의

질의

- 1년 아니 1학기라도 기준 학점이 C로 유예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신

2009. 1. [대학장학지원과]

- 2009.11.19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든든학자금, ICL) 세부실행방안 발표 당시 성적 기준은 C학점 이상 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률 심의과정에서 B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성적기준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든든학자금은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고, 그 성과가 취업으로 이어져 상환률 제고가 달성될 때, 제도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09년 현재 대학 재학생의 C학점이상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고, B학점이상 비율도 75%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동 제도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점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직전학기에 C학점 이하를 받아 든든학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도 다시 B학점이상을 득하게 되면 든든학자금 대상이 되어 학생들의 성취를 자극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만약 C학점으로 든든학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❶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문의

질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회신

2010. 6. 4. [대학장학지원과]

-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은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업 후 일정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 하며, 대출신청 현재 만35세 이하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세 자녀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셋째자녀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❷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자격에 대하여

질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0. 4. 7. [대학장학지원과]

- 든든학자금 제도의 도입취지는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소득 하위 7분위 까지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 80/(100점 만점) 이상
- 다만, 소득분위의 경우 일반적인 급여소득뿐만 아니라, 소유부동산, 동산(자동차 등), 전세금, 경제활동지수(성별 및 연령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에서 연령제한

질의

- 저는 2010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공부가 늦어서 제 나이가 39살이 됩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회신

2009. 11. 25. [대학장학지원과]

-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는 '튼튼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신청자격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와 같이 36세 이상인 학생은 기존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기존 학자금대출)]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만55세 이하)
- 학점 및 성적기준 : 12학점이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등은 제외)
 - ※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신용유 의자, 신용등급 9, 10등급 등 제외)
- 거치기간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이자지원('10.2학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 무이자(정부에서 이자전액 지원)
 - 소득 4~5분위 : 1.2%(정부에서 4% 이자지원)
 - 소득 6~7분위 : 3.7%(정부에서 1.5% 이자지원)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민원

질의

-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라도 나이 36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도 국가무상지원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회신

2010. 4. 2. [대학장학지원과]

- 2010년 든든학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성적요건(나이제한 없음)이 충족되는 경우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원(3월 29일~4월 6일 신청)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11년 학자금 지원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여부는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학생 학비대출

질의

- 유학생도 학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3. 23.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 재정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대학에 유학을 간 경우 학자금 대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내대학 졸업 후 해외대학에 진학할 학생들(현재 유학중인 자는 제외)을 위한 “국비유학생 제도”가 있어 매년 유학생을 선발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친권자 동의관련 질의

질의

- 저는 내년에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동의가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친권은 아빠한테 있어서 부모님동의 를 하려면 아빠께 필요하고 엄마는 제3자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 왜 친권이 아빠한테 있다고 엄마는 3자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2009. 12. 31. [대학장학지원과]

- 현재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09년까지 친권자 동의를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0년부터 친권자 동의 없이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용 공인 인증서 발급 시(인터넷 banking 등) 부모 동의를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이자지원 관련 소득기준 산정에 관한 질의**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정하는 무이자 대상 가계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한 자 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신

2010. 2. 24. [대학장학지원과]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09-1학기 소득 1~2분위까지 이자전액을 지원하였으며, '09-2 학기 소득 1~3분위까지 이자전액을 지원을 확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득분위의 경우 '09년 6월 1분위(~1,069만원), 2분위(~1,813만원)이며, '10년 1월 1분위(~ 1,125만원), 2분위(~1,907만원), 3분위(~2,489만원)입니다. 다만 소득분위의 경우 단순 근 로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능력, 소유재산(자동차, 집 등)소득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이자지원제도의 문제점입니다.**질의**

- 현재 9월 10일 의경복무를 앞둔 학생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3학기를 대출받았습



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이자도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빠져나갑니다. 그런 현역병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학자금보증기금에서는 현역병 이자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 해군, 공군을 제외한 의경이나 전경 혹은 여타 대체복무자는 현역병 이자 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경과 의경도 똑같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는데 현역병 이자 유예를 받을 수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7. 21. [대학장학지원과]

- 현역사병 이자유예제도란 군복무기간 동안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후에 유예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정부 한정된 예산상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민원인과 같이 공익이나 전·의경으로 확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꿈나래21 홍보간행물 구독방법

질의

- 교과부에서 만드는 홍보간행물 「꿈나래21」을 보았는데, 저 같은 일반 개인들도 구독이 가능한지, 우편물로 발송해주시기도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2. 9. [홍보담당관]

- 꿈나래21은 홈페이지 꿈나래21 웹진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http://narae21.mest.go.kr>)
- 꿈나래21은 전체 내용이 보기 쉬운 e-Book 형태로 제공되며 PDF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카페 ‘꿈나래21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실 때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꿈나래21 책자를 보내 드리며, 받아 보신 후 읽고 나신 소감을 매월 카페에 남겨주시면 지속적으로 꿈나래21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제도를 신청 방법

질의

- 국비유학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 같은걸 알아보고 싶은데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2. [국제협력정책과]

- 국비 유학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교과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국비유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의 선발을 통하여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그 대상자를 선발 공고하고 있으므로 국립국제교육원홈페이지 (<http://www.niied.go.kr/>)를 참고하여 문의(정부초청장학생 : 02-3668-1369, 국비유학생 : 02-3668-1375)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비유학 지원정책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국비장학생 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유학을 보내준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 현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9. [국제협력정책과]

- 2010년 2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유학생 전체 선발인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특별전형하게 되었습니다.
- 이 법안에 근거하여 201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공고가 3월경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참고하시되, 지금부터 준비하실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준비(변경 가능)
- 외국어(TOEFL, TEPS, TOIEC, 일어, 중국어 등) 공인인증 성적입니다 .
- 법안 공포 이후 본원에서는 구체적인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므로 위의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추후 선발공고를 참고로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관련 문의

질의

- 국립대학교에서 특정 기술 직렬이 현재TO가 6급 1명, 7급 2명입니다. 총액인건비를 적용하여, 7급 장기근속(15년 이상)으로 인하여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하여 조정정원을 하였습니다.
- 향후, 기존 6급 1명이 승진발령 또는 퇴직(정년, 명예포함) 발생 시 다시 원래 정원인 6급 1명, 7급 2명으로 조정되는지요?
- 아니면, 6급 2명, 7급1 명으로 해서, 7급인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하고, 7급 정원을 7급 이하로 충원이 가능한지요?
- 문의내용의 핵심은 현재 정원은 6급 1명, 7급 2명인데, 총액인건비를 통하여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을 하고, 기존 6급 1명의 정원이 자연소멸(승진발령 또는 퇴직(명예, 정년))

시 정원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09. 9. 15. [행정관리담당관]

-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시행하는 국립대학은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을 각각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각 국립대학은 매년 당해 연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을 수립(절감재원 마련)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직급 상향된 정원(운영정원)의 유지 및 확대, 또는 기존 정원(기준정원)으로 복귀 등 당해 연도 직급상향 인원과 절감재원 마련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국립대학은 직급 상향된 운영정원의 계속 유지 또는 기준정원으로 복귀를 매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직급 상향된 운영정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절감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기준정원으로 복귀 시에는 절감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적으로 국립대학은 매년 교과부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절감재원은 매년 변경되어야 합니다.

학교건축 계약의 유형

질의

- 대학교 안에 교육용기본재산인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을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데
 - 사학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계약의 유형에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 건축 공사 금액이 약 150억 이상인 경우인데 일반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조건에 해당되면 지명경쟁 및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28. [교육시설담당관]

- 동 규칙에 의거 모든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단,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질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계획)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해당 사항의 결정,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동의, 협의, 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서 도 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접수 시 도시관리계획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도 교육청에서 시군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면 학교시설로 결정되는 걸로 해석 하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24.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 그러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미결정 부지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열람공고·구의회 의견 청취 등 입안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고 의제 처리되는 사 항도 아니므로 “협의 반려 또는 “부동의 회신될 것이므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을 먼저 받은 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해석 요청

질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7조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경우 승인 및 고시까지 과도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포함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실시설계 등)의 재작성 및 재협의 발생 등으로 당초 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과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처리 됩니다.
-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영 제7조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경우 현실적으로는 승인 및 고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 절차의 간소화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시설사업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절차에 따른

질의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사립학교)시설을 설치하고자 먼저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도 교육청에 제출하였더니 당해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시행 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학교용지 지정여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나) 이에 질의인은 학교시설 승인 신청을 반려한 도교육청의 취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서 노력하던 중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따로 받지 말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따라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되는 바, 그 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인은 위 양 행정청(도 교육청과 당해 군청 및 도청)의 서로 다른 법령 해석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질의인은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학교시설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해 감독청(도 교육청)에 학교시설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감독청이 소관행정기관과 협의 그 결과에 따른 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 제5조)

나) 을설

- 신청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먼저 받은 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질의자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이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그 법 제1조(목적)에서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규정에 비추어 보아 이법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잘못 해석한 부당처분이 명백하므로 갑설에 따라 승인 처분을 하여야 함.

회신

회신일 : 2009. 7. 24.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 그러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미결정 부지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열람공고·구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고 의제 처리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협의 반려 또는 “부동의 회신될 것이므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을 먼저 받은 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교원현황

질의

- 알림마당 - 보도자료에서 “대학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았는데, 2009, 2008년 자료만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의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10. 5. 26. [인재정책분석과]

- 말씀하신 대학교원현황 자료는 교육통계 사이트(<http://cesi.kedi.re.kr/>)에서 대학통계-주제별-교원 통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취업자 대상 건보가입자 현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질의

- 2010년도부터 취업률 산정방식이 건보가입자로만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직장 건보가입자를 검증하신다고 공시 하였습니다.
- 이에 사전에 대학별로 가입자 명단을 보내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전체 공시하기 전에 각 대학별로 해당년도 취업 대상자에 대한 사전 건보가입자 현황을 사전에 1회 정도라도(4월 또는 5월 경) 보내 줄 수 없는지요? (대학별도 희망대학을 접수 받아서)
-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는 건보를 파악을 위한 시간과 인력을 미취업자에 대해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여 알선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취업률 향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신

2010. 4. 14. [인재정책분석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는 해마다 약 55만명 정도이며, 고등기관졸업자에 대한 신상정보 입력이 5월말 정도에 완료예정입니다. 따라서 졸업자 정보가 확인된 후 건강보험DB 가입자 대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보험DB가입자 조사는 1달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건강보험DB 결과를 보내주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시점이 '10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DB 연계결과는 6월말 정도에 각 대학으로 제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알리미 공시

질의

- 학교알리미에서 올해 정보가 안 나옵니다. 아직도 2009학년도 정보만 제공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양식이 차이가 있어 제대로 된 비교도 힘들고요. 학교알리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에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통일 된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신

2010. 6. 16. [인재정책분석과]

- 학교 정보공시는 항목별로 공시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2,4,5,9,11월에 정기적으로 공시가 되고,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은 수시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 학교알리미의 학교정보는 당해연도 계획과 전년도 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실적 자료는 예결산, 급식비 지원 등 실적을 수치로 동일한 양식에 따라 공시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계획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위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12월부터 학교공시 항목 중 계량정보 22개에 대해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기 초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방법

질의

- 얼마 전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한 편이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논문표절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7. [학술진흥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07.2)하였습니다.
- 동 지침에 따라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는 각 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처리규정에 따라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따라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해서 우선 한국환경과학회로 제보하시고, 학회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의 소속 기관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은 문제가 되는 논문 명을 비롯해서 누가 언제 어떤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표절이 의심되는 해당페이지와 행 표시)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고,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교원이 음주운전 사면 시 이로 인한 징계사유도 소멸되는지

질의

-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위로 인하여 현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9.8.15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소멸되는지요?(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8. 19. [인사과]

-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이는 형사벌이 집행 면제된 것이므로 행정처벌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까지 당연 소멸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보안업무 관련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3조(비밀의 생산)를 보면 비밀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위 조항에 의거하여 산하기관(초·중학교) 보안감사 시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밀(대외비)문서를 생산(단순 문서만 생산-복제, 복사 아님)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질의1) 그런데 위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밀문서는 생산하고자 할 때에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에는 이때의 승인은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1항의 생산의 의미와 2항의 발간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아니면 위 43조의 조항이 “비밀의 생산”이 아닌 “비밀의 발간”이며, 제①항의 “비밀을 생산하고자”가 “비밀을 발간하고자” 인데 문구가 잘못 기재 된 것으로 해석하여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는 생산이 아닌 발간 시에만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 (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



런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9조(민원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및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



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확인·점검·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 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



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9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①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접수·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①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08.2.29>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위·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장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제8조·제14조 내지 제16조는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③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실) ①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민원사무심사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



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민원창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

제36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

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에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40조(정보보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41조(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제도의 개선)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3조(설치)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구성 등) ①조정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의견청취 등) ①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의견수렴, 확인·점검 및 평가 등

제50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1조(확인·점검 등)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3>

②행정안전부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평가) ①행정안전부장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안전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22439호, 2010.10.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 6. 5,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호적·주민등록·병사·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에 갈음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결과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 영 제14조의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7조 (기관간의 협조)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제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처리 관련 서식)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법 제19조제3항의 사전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제1항의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및 사전심사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독촉장) 영 제33조제2항의 민원서류 처리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34조에 따라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332호, 2006.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회신 사례집

총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박준모
채안병

기획

사무관
교육연구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김용만
김동호
배기주
박지영

편집정리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황정숙
류지희
이학모
오지혜
권명숙

인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